

발 간 등 록 번 호

11-1741000-000237-1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2019. 12.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발 간 등 록 번 호

11-1741000-000237-1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2019. 12.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주의사항

- ① 본 매뉴얼의 저작권은 행정안전부에 있으며 놀이시설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 등 개인은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www.cpf.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쇄물로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유상교육의 교재로 활용하는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 ② 본 매뉴얼은 **2019.12.3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제1장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법령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www.cp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의 이해 1	1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의 이해 2	15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검사	29
❖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1	45
❖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2	55
I.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57
II. 이용금지, 폐쇄 및 불합격시설에 대한 조치	64
III.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지정제도	68
❖ 관리감독기관의 임무 및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	71
I. 어린이놀이시설의 등록·변경 등	73
II.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77
III.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등	79
IV. 중대사고 보고	81
V.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한 벌칙	83
❖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85
I. 2018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현황	87
II. 안전사고의 유형별 분석	88
III. 중대사고의 신고 및 처리	97
IV.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수칙	100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111
I.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113
II.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등록	12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의 이해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의 이해 1

1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정의된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기구적 요건과 장소적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의미한다.
 - (기구적 요건)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중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하는 제품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 (비교) 모래, 포설, 고무매트 등 충격흡수용 바닥재만 설치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 (장소적 요건)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된 장소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해당 되어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1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1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0.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

- 제14호부터 제20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놀이시설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설치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2019년 7월 7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 2019년 6월 7일까지 놀이기구의 안전인증서를 첨부하여 정기시설검사를 신청
 - ↳ 인증서가 없는 경우 제품인증*을 받아야 함 (시행령 부칙 제27320호 제3조 제2항, 제3항)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지정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 업무 수행

- 단, 2004년 12월 9일부터* 2017년 7월 7일 이전에 설치된 놀이기구는 2019년 7월 7일까지 놀이기구의 안전인증을 받고(2015.12.24. 이전 설치된 물이용 놀이기구는 제외),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

* 2004. 12. 9. 이전 설치 놀이시설은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

■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중 물이용 어린이놀이기구(9~10페이지 놀이기구의 예시 참조)가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개정('15.12.24.)이전 설치한 기구 검사
 - 물이용 조합놀이대는 일반조합놀이대로 검사
 - 버킷형, 기타단품형 물이용 놀이기구는 등록 후 검사 제외
- ※ (비교) 유원시설의 워터슬라이드, 바닥분수, 어린이수영장, 인공폭포 등은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FAQ

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호~제20호에 대하여 해당 날짜까지 안전인증 및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정의된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기구적 요건과 장소적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설치검사 시 안전인증을 확인하지만, 시행령 별표2의 제14호~제20호는 장소가 추가된 사항으로 2019년 7월 7일까지는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그 이전에 안전인증 및 정기시설검사를 받아 운영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시설물은 인증없이 정기시설검사를 진행하지 못하므로 검사를 받지 못한 불법시설물이 됩니다.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이용금지 조치 후 해당 내용을 이행 후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2 어린이놀이기구의 정의 및 종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 어린이놀이기구의 정의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기준 부속서 2 부록 1)

○ 일반 놀이기구

-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어린이가 스스로 정한 규칙이나 이성적 판단에 따라 항상 변할 수 있는 놀이를 위해 제작된 부품 및 구조체를 포함한 시설과 구조물을 말한다.
- 어린이놀이기구는 옥내·외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집단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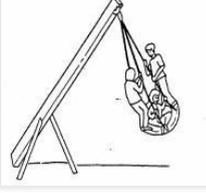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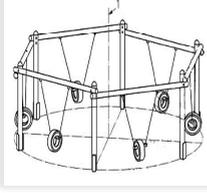
주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어린이놀이기구가 아닌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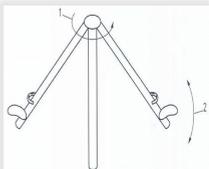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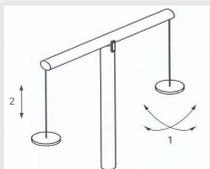
- 안전인증기준에서 **완구**로 규정된 것 ex) 이동식 유아용 그네·미끄럼틀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ex) 꼬마기차, 붕붕뽀뽀
- 안전인증기준에서 **물놀이기구**로 규정된 것 ex) 어린이용 튜브, 물놀이 제품
<주의> 물이용 놀이기구는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
- **가정에서 사용되는 놀이기구**

○ 물이용 놀이기구

- 어린이놀이기구(조합놀이대 등)에 물을 공급(분사 등)하여 놀이를 용이하게 하는 놀이기구(어린이용 물놀이기구는 제외)를 의미한다.
- * (비교)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는 어린이가 물에서 놀이를 하거나 수영을 배울 때 사용자의 부양을 도울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로서 어린이 고무튜브, 어린이 구명조끼 및 수영 보조용품 등을 말함

■ 어린이놀이기구의 종류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기준 부속서 2)

분류	놀이기구 사진		
<p>① 그네</p> <p>하중 지지대에 매달려 있는 좌석받침판이 앞뒤 좌우 등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될 것</p>			
	단일 회전축 그네(1형)	다 회전축 그네(2형)	유아용 그네
			
	단일 지점 매달림 그네(3형)		연결 그네(4형)
<p>② 미끄럼틀</p> <p>경사면을 가진 구조물로서 이용자가 규정된 트랙 내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될 것</p>			
	독립 미끄럼틀	독 미끄럼틀	
<p>③ 정글짐</p> <p>통나무, 파이프, 타이어 등으로 구성된 육면체, 둥근 지붕 또는 탑 모양의 구조물로서 자유롭게 매달릴 수 있도록 설계될 것</p>			
	사각 정글짐	복합 정글짐	원형 정글짐
<p>④ 공중 놀이기구</p> <p>손잡이를 잡고 매달리거나 공중에 매달려 있는 좌석에 앉아서 케이블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p>			
	좌석형	매달림형	매달림형

분류	놀이기구 사진		
<p>⑤ 흔들 놀이기구 아랫부분의 구성체가 좌석이나 자리를 지지하는 형태로서 이용자가 그 좌석이나 자리에서 그 놀이기구를 직접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될 것</p>	 <p>시소1형</p>	 <p>스프링시소1형</p>	 <p>흔들2A형</p>
	 <p>흔들2B형</p>	 <p>흔들3A형</p>	 <p>흔들3B형</p>
	 <p>흔들4형</p>	 <p>흔들5형</p>	 <p>흔들6형</p>
<p>⑥ 오르는기구 봉, 로프, 그물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물로서 손으로 붙잡고 오르내리도록 설계될 것</p>	 <p>평행봉</p>	 <p>늑철</p>	 <p>철봉</p>
	 <p>늘임봉(줄)</p>	 <p>암벽오르기</p>	 <p>복합형 오르기</p>
<p>⑦ 회전 놀이기구 한 개 이상의 좌석, 받침판, 손잡이가 설치되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트랙을 따라 회전하도록 설계될 것</p>	 <p>회전A형</p>	 <p>회전B형</p>	 <p>회전B형</p>

분류	놀이기구 사진		
----	---------	--	--



회전C형



회전D형



회전E형

⑧ 건너는기구

일어서거나 기거나 매달려서 앞뒤, 좌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무지개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⑨ 조합놀이대

①부터 ⑧까지의 놀이기구 중 두 가지 이상의 놀이기구가 결합된 형태일 것



일반형



물이용형



⑩ 스페이스 넷

유연한 요소(예, 로프, 체인 등)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기하학적 3차원 등반 구조물



⑪ 폐쇄형 놀이기구

지정 출입구가 있는 3차원 폐쇄형태의 놀이기구 및 구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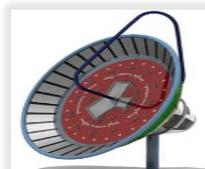
실내놀이기구



트램블린 일체형
실내놀이기구



볼풀장

분류	놀이기구 사진		
<p>㉔ 기타 놀이기구</p> <p>①부터 ㉓까지의 놀이기구 외에 어린이의 신체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조합물</p>			
	모래집	소리전달기	자가발전 놀이
			
	물놀이대	모래놀이기구	기차놀이대
			
	점프볼	원반놀이기구	돌림판
			
			
		물이용형	
<p>㉕ 충격흡수용표면재</p> <p>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가 사용 될 것</p>			
	고무매트	고무블럭	실내매트

3 어린이놀이시설법의 구성과 내용

■ 목적

-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 주요내용

-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제4조) 및 지정취소(제5조)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제11조) 및 설치검사 등(제12조)
-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개선(제13조)
- 관리주체의 의무
 - 유지관리(제14조) 및 안전점검(제15조), 안전진단(제16조)
 -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 내 안전요원의 배치(제15조의2)
 - 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제17조)
 - 안전관리자의 배치 및 안전교육(제20조)
 -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제21조)
 - 중대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 및 사용중지(제22조)
- 그 외 관리감독기관의 지도·감독 및 행정사항 등

4 어린이놀이시설법 하위 법령의 구성과 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제2조 및 별표2)
- 설치검사에 대한 재검사(제8조의2)
- 설치검사 합격의 표시(제10조 및 별표5)
-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방법(제10조의2)
- 시설개선계획서의 제출(제10조의3)
- 안전점검의 주기, 항목 및 방법(제11조 및 별표6)
- 보험의 가입 시기 및 보상기준(제13조 및 별표7)
- 중대사고의 종류 및 중대사고 시 자료제출 의무(제14조)
- 중대사고에 대한 보고사항(제14조의2)
-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제18조 및 별표9)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설치검사 신청서류(제14조) 및 정기시설검사 신청서류(제15조)
- 시설개선계획서의 제출 방법 및 서식(제15조의3 및 별지 제14호)
-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의 자격 및 의무(제16조의2)
- 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방법(제17조)
- 안전교육의 시기 및 주기(제20조)
- 중대사고에 대한 보고방법(제20조의2 및 별지 제20호)

■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2019.6.7.) 일부개정

- 안전검사의 신청(제5조) 및 안전검사의 실시(제6조)
-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제11조 및 별표 2)
- 부적합 놀이시설의 이용금지(제13조 및 별표 3)
- 안전교육(제15조), 보험가입 결과(제16조) 및 중대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제17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2018.4.11. 전부개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2018.1.10. 제정)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2017.7.26. 타법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의 이해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의 이해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다른 법률 등에서 놀이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 설명한 「영유아보육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외에도 시·도 교육감이 고시한 교구 기준 등에 따라 학교, 유치원에도 놀이시설의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치원, 학교 등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기준 등을 문의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일정 수 이상의 놀이기구 설치의 의무화하였으나, 2012년 8월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규정이 삭제되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관련 법령

가. 영유아 보육법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의무 (시행규칙 별표1)

㉸ 정원 50명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준에 따른 옥외놀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단 직장어린이집의 경우는 실내놀이터(지하층은 제외)도 가능하다.

○ 적용대상 : 정원 50명 이상 어린이집 (12개월 미만 영유아만 보육하는 경우 제외)

○ 설치기준

- 영유아 1명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로 설치
- 6세 미만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대근육 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1종을 포함한 놀이기구 3종 이상 설치
- 단, 직장 어린이집 내 옥외놀이터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옥내놀이터(지하층은 불가)를 설치하거나 관리주체의 승낙 하에 인근 놀이터(놀이기구 3종 이상 설치된 놀이터만 해당)를 활용 하는 것도 가능

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의무 (령 제55조의2)

●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반드시 놀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적용대상 :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
- 설치기준
 -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 또는 단지의 녹지 안에 설치
 - 실내 설치 시 마감재, 접착체 및 그 외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
 - 인접대지경계선과 단지 내 도로·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접객업장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의 신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5호)

●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장 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업신고 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을 첨부해야 한다.

- 신고주체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 제출서류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또는 정기시설검사) 합격증
 - ※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일정 수 이상의 놀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2012년 8월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규정이 삭제되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법령

가. 환경보건법 (환경부)

■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법 제23조)

-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중금속 검사 등이 환경보건법의 어린이활동공간 검사로 대체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기 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신청주체 :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
 - 검사시기 : 아래로부터 30일 이내
 -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때
 - 검사내용(어린이놀이시설 관련) : 바닥재 환경안전관리기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준수 여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시행령 별표2)

4.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모래 등 토양에 함유된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및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시행규칙 별표2)

(단위 : mg/kg)

물질	기준
카드뮴	4 이하
비소	25 이하
수은	4 이하
납	200 이하
6가크롬	5 이하

비고 : 위 기준의 적합여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나.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5.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해당 표면재료에 함유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합은 질량분율로 0.1퍼센트 이하일 것

나. 해당 표면재료의 폼알데하이드 방산량(放散量)이 75mg/kg 이하일 것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 소독 의무 (법 제51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 하단의 장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은 하단장소의 일부에 해당 될 경우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7의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소독횟수 기준(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표 7)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 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 1개월	1회 이상 / 2개월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3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6개월

다. 물환경보전법 (환경부)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의 신고 (시행규칙 제89조의2)

-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15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처

대상구분		신고처
공공 운영시설	국가 및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유역·지방환경청장
	시·군·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시·도지사
민간 운영시설		시·도지사

- 제출서류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서(별지 제40호의2)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 수질 검사주기 및 검사기관이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 위반시 벌칙사항(시행령 별표 18)
 -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 운영, 수질 및 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법 제61조의2)

-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은 수경시설에 해당되므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수질 기준

가. 측정항목별 수질 기준

검사항목	수질기준
1) 수소이온농도	5.8 ~ 8.6
2) 탁도	4NTU 이하
3) 대장균	200(개체수/100mL) 미만
4)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0.4 ~ 4.0mg/L

나. 검사 방법 및 주기

- 1) 가목의 측정 항목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 2) 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도록 한다.

2. 관리 기준

- 가.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심을 30cm 이하로 유지하고, 부유물 및 침전물 유무를 수시로 점검, 제거하여야 한다.
- 나.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켜야 한다.
- 다. 운영기간 중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물을 소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은 살균·소독제 또는 자외선 소독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 라. 운영기간 중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자 연락처,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 이용자 주의사항(음용 금지, 애완동물 출입금지 등)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 마. 해당 연도의 운영기간 중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관할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바.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이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재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 기준의 초과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에 수질 검사결과, 초과 원인, 조치 이행 및 재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여러 법이 적용되는 사례

■ 키즈카페 관련 정의

1) 키즈카페

- 실내 공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 상기에 따른 유기사설(유기기구) 또는 놀이기구가 없더라도, 이와 유사한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업소에도 적용할 수 있다.

※ 제외대상

식품접객업(식·음료 판매)이 주가 되는 형태로서, 손님에게 무료(서비스)로 유기기구,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설치하여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

예시) OO감자탕, OO레스토랑, OO초밥, OO갈비 등

2)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관광진흥법)

-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전기·전자 장치 등을 활용하여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 등을 말한다. (단,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한다.)

3) “유원시설업”(관광진흥법)

- 유기사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유원시설업의 종류에는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이 있다.

유원시설업 종류

유원시설업의 종류	정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4) “어린이놀이기구”

-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5)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말한다.

6) “어린이제품”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어린이제품 제외 대상

1.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3.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4.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5.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사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연령 제한이 있나요?

답 ‘없다’ 어린이제품 특별법에서 어린이제품의 정의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속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이 13세 이하만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이용연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13세 이상이 이용을 하면 안된다는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7)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 키즈카페 유형

- 1)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제공하는 실내 영업소
- 2)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제공하는 실내 영업소
- 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제공하는 실내 영업소

■ 키즈카페 관련 부처 및 법령

관련 시설(업종)	소관부처	관련법률	주요 업무 내용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유원시설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기구·유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및 안전기준 관리 • 유원시설업 관리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 (설치前 제품인증) •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및 관리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놀이기구 시설·안전기준 •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및 관리
환경유해물질 등	환경부	환경보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료·마감재료·토양·바닥재의 중금속 함유량 관리 등
식음료시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안전기준 마련 • 일반음식점 등 위생관리
소방시설	소방청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예방시설, 소방점검

F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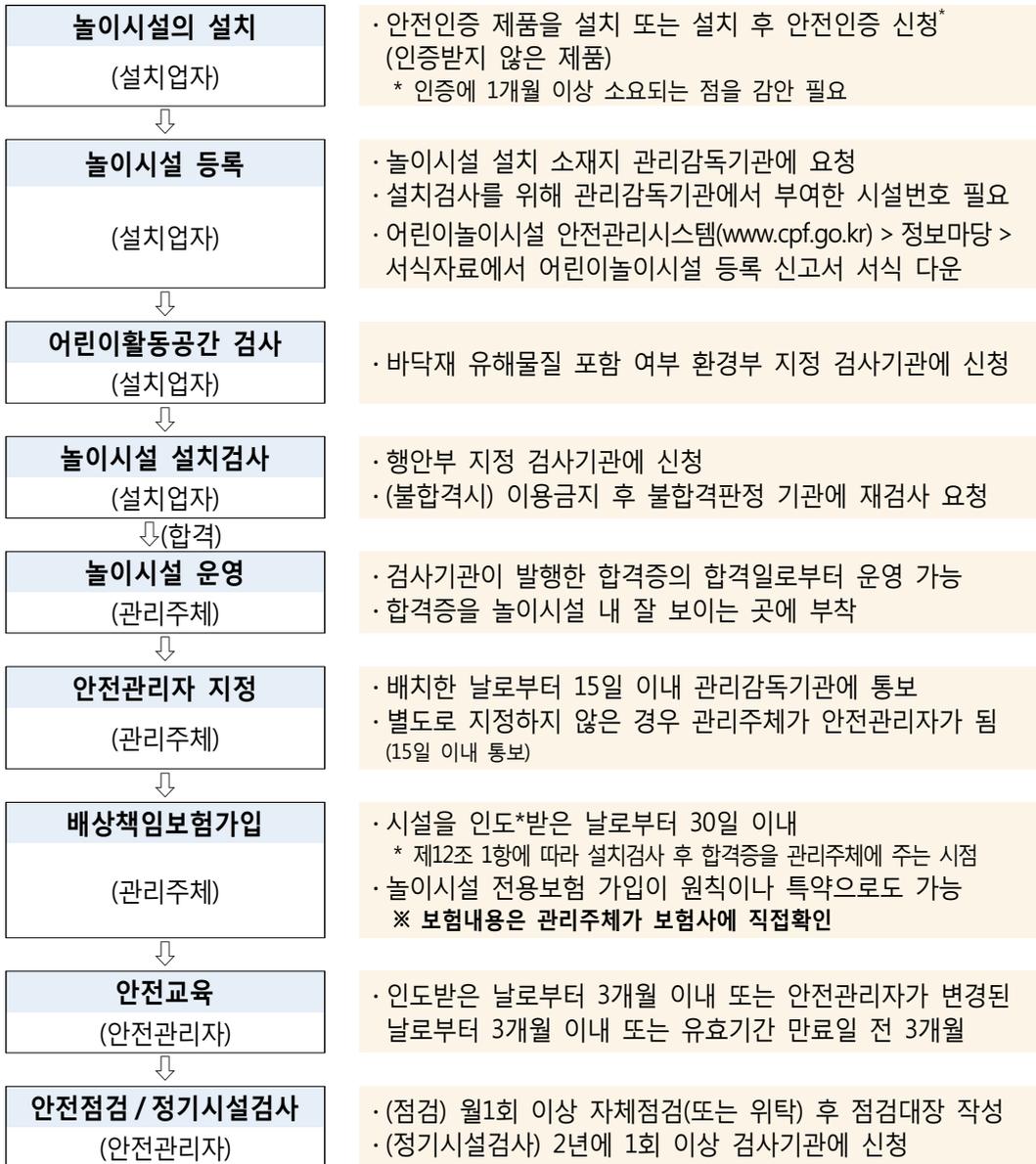
문 키즈카페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답 신종·복합 놀이제공업소인 키즈카페와 관련한 다양한 법령과 기준들이 적용된다.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한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키즈카페 운영자 등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검사

1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관리 절차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 안전인증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만 설치 가능하므로 “설치검사 전” 안전인증을 받도록 한다.
 - ※ 현재는 설치검사전 안전인증 확인을 받아야 하나, 2020.4.1.이후는 합격판정 전까지만 안전인증을 받으면 됨(2020.4.1.)
 - (기 성 품) 구입한 놀이기구 모델에 대한 인증서를 제작업체에게 받아 검사기관에 제출
 - (주문제작) 제작·설치 업체가 설치검사기관에 인증* 요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안전인증기관 문의)
 - * 안전인증에 4주 이상 소요되므로 시설준공검사 시기에 촉박하지 않도록 인증기관 등에 사전 문의

■ 어린이활동공간 검사 (환경부)

- 어린이놀이시설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중금속 검사가 어린이활동공간 검사로 대체됨에 따라 아래의 경우 반드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도록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놀이시설의 연면적 33㎡이상 증축하거나 70㎡이상 수선하는 경우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기관 현황 (2019.7.31. 기준)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675 (02-855-1802)	대한산업안전협회	02-860-7150 (0507-351-7007)
FITI 시험연구원	043-711-8868 (043-711-8810)	KOTITI 시험연구원	02-3451-7314 (02-3451-7199)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3817 (031-455-7362)	한국환경수도연구원	02-2637-1234 (02-26311-876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6921-3200 (02-6921-3299)		

FAQ

문 어린이놀이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 어린이놀이기구의 의무설치 대상은 아래 3가지로,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할 경우 어린이 놀이기구 철거가 불가능 합니다.

-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 어린이집 : 50인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1)
- 유치원·학교 : 시·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 교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8조)

3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설치자는 설치검사 전에 관리감독기관에 어린이놀이시설의 등록을 요청하여 시설등록번호를 받아야 한다.

- **신 청 자**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 **신청방법** : 등록신고서를 관리감독기관에 제출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 정보마당 >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 **등 록 자** : 관리감독기관 (시·군·구 또는 교육지원청)
 - 학교, 유치원 및 학원 : 교육지원청
 - 그 외 주택단지, 어린이집, 식품접객업 등 : 시·군·구
 - ※ 키즈카페 통계 관리를 위해 대규모점포, 식품접객업에 설치된 유료시설은 「놀이제공업소」로 등록 필요
 - < 주의 > 놀이기구의 등록 : 최초 설치검사 이후 기구 추가시 관리감독기관이 등록하고 검사값은 검사기관에서 등록 / 놀이기구의 삭제 : 관리감독기관
- **통보내용** : 놀이시설명, 장소 및 주소 등

FAQ

- 문** 설치검사 신청을 위해서 시설번호가 필요합니다. 시설번호를 부여 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해야하나요?
- 답**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5.9.22)으로 설치검사 시 신청서에 반드시 시설번호를 기입하도록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시설번호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놀이시설이 등록이 되어야 하며, 놀이시설 등록은 놀이터 소재 관리감독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교육청 소관(학교·유치원·학원), 지방자치단체 소관(교육청 소관 외 시설)
- 문** 어린이놀이시설 시설명, 주소, 관리주체 정보, 놀이기구 등 놀이시설 정보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면 되나요?
- 답** 관리주체에게는 시스템 로그인 ID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직접 놀이시설 정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놀이시설 정보수정은 소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니, 관리감독기관에 시설정보 수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신고서

설치자 (관리주체)	성명		사무실 전화	※ 핸드폰 번호 입력 불가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분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설명	○○아파트 101동 옆 놀이시설 ※ 동일주소에 복수의 놀이시설이 있는 경우 구체적 위치 (예, 101동 옆) 표시 요망			
	도로명 주소	우편번호, 주소 등 구체적으로 기재 ※ 도로명 주소가 없을 경우 지번주소 기재			
	설치장소	주택단지, 도시공원, 어린이집, 식품접객업소, 목욕장업소, 대규모 점포, 놀이제공업소, 학교,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장소 중 선택 *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키즈카페는 놀이제공업소로 등록	의무여부	의무 또는 비의무 중 선택 ※ 의무설치 놀이터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 정원 50명 이상 어린이집	
	민간/ 공공구분	민간시설 또는 공공시설 중 선택		설치일자	yyyy년 mm월 dd일
	실내·외 구분	실내 또는 실외 중 선택		물이용 놀이기구	포함 또는 미포함 중 선택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opf.go.kr) > 정보마당 >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4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 신청자 : 설치자*(원칙), 관리주체**(예외)

* 설치자가 설치검사 합격증과 함께 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해야 함

** 법 개정 등으로 기 운영시설을 설치검사를 하게 된 경우

■ 검사기관 : 행정안전부 지정 검사기관

(2019.12.31. 기준)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642 (02-856-5619)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070-4617-3441 (031-5171-3121)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3817 (031-455-7363)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 협동조합 한국안전검사연구원	02-573-3330 (02-533-8818)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02-512-3780 (02-540-3780)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031-898-0325 (031-898-4901)
대한산업안전협회	02-860-7182 (0507-351-7007)	FTI 시험연구원	043-711-8868 (043-711-8810)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한국시험검사기술원	02-6954-4141 (02-6954-4145)	(사) 한국시설물안전관리단	02-855-6780 (070-7545-5678)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070-7493-4327 (02-493-0978)	(사) 한국놀이시설안전기술원	1811-9142 (031-601-9144)

■ **검사시기** : 설치 ~ 관리주체 인도 또는 운영 시작 전

■ **신청시 제출서류**

- 설치검사 신청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 목록(안전인증번호 포함)

■ **검사수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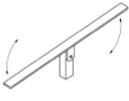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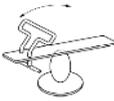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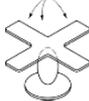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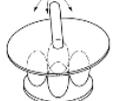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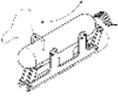
-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수수료 기준 내에서 검사기관이 결정**

(단위 : 원)

품목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안전진단 수수료
일반 놀이 기구	그네	42,700	68,000
	미끄럼틀	61,800	68,000
	정글짐, 오르는기구, 건너는기구 (철봉, 늑철, 늘임봉, 구름다리 등)	42,700	68,000
	공중놀이기구	61,800	68,000
	회전놀이기구	61,800	68,000
	흔들놀이기구	47,500	68,000
	조합놀이대	90,600	68,000
	실내놀이기구	66,600	68,000
	기타 놀이기구 (모래집, 평행봉 등)	42,700	68,000
물이용 놀이 기구	조합놀이대형	90,600	68,000
	버킷형	37,400	68,000
	기타단품형	36,000	68,000
	물순환시설	77,700	68,000
표면재	모래, 고무, 포설 등	33,000	

※ 비교

1. 수수료는 위 금액 범위에서 안전검사기관이 정한다.
2. 동일 시설 내에 동일 놀이기구가 다수인 경우, 두 번째 기구부터는 30%를 각각 감액한다. 단, 흔들놀이기구는 형식에 따라 구분하며 동일한 형식은 설치된 기구 수량에 관계없이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다른 형식은 수수료의 30%를 각각 감액한다.

구분	1형 (축 시소)	2형 (단일지점 시소)		3형 (다지점 시소)		4형 (흔들 시소)
예시						
특징	• 수직이동	• 기구 지탱 부분이 단일 지점(중심축 : 스프링 등)		• 기구 지탱 부분이 다지점		• 수평이동

3. 물순환시설은 물이용 놀이시설별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4. 물이용 조합놀이대에 설치된 버킷에 대해서는 물이용 조합놀이대형 수수료와 별도로 버킷형 수수료의 30%를 각각 부과한다.

5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

- 신청자 : 관리주체
- 검사기관 : 설치검사기관과 동일
- 검사주기 : 2년에 1회 이상
 - 신청시기 : 정기시설검사(또는 설치검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 신청시 제출서류 : 정기시설검사 신청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검사수수료 : 설치검사와 동일

FAQ

- **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신청 후 검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답**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는 **설치검사 처리기간이 30일로** 되어 있으나, **12개 안전검사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신청 후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개선) ①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린이 등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②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나 정기시설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거나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설개선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개선의 완료와 제3항의 계획서에 따른 시설개선의 이행을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그 확인·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 검사기관에서 발부한 검사합격증(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사본을 놀이시설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 불합격 판정을 받은 즉시 어린이놀이시설 출입 및 이용금지 조치 후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부적합 놀이시설의 이용금지 조치요령

1. 이용금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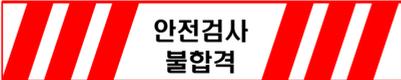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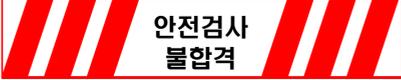
가. 이용금지 표시 : 이용금지 알림판, 현수막 등을 이용함

- 표시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불합격에 따른 이용금지 사실을 알림
- 표시장소 : 놀이시설 입구, 이용 안내판, 개별 놀이기구 등에 부착함
- 표시방법 : 이용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일정크기(1m×1m) 이상으로 부착함

나. 이용금지 조치 방법

- ‘이용금지’ 또는 ‘안전검사 불합격’등의 글자가 인쇄된 봉쇄 테이프를 이용하여 조합놀이기구, 미끄럼틀 등 놀이기구의 진입부를 빈틈이 없도록 막아 출입을 못하도록 차단함
- 미끄럼틀·정글짐·구름다리 등 고정형 놀이기구는 진입부 봉쇄 외에도 활동 구간별 막음조치를 실시하고, 그네·회전기구·공중놀이기구·시소 등 작동형 놀이기구는 고정부에 연결하여 결박 조치함

2. 이용금지 표시 예시

<p style="text-align: center;">이 용 금 지</p> <p>본 시설은 안전기준에 미달되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이용금지된 시설로서 안전검사 합격 시까지 시설물 이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오니, 임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자와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유치원장 ○○○ (문의전화 : 02-123-1234)</p>	 
<p style="text-align: center;">이용금지 안내판(예시) (1m×1m)</p>	<p style="text-align: center;">봉쇄 테이프(예시)</p>

-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시설개선계획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시설개선 대상 및 시설개선 사유별 개선조치 내용
2. 시설개선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3. 시설개선의 추진일정

※ 계획서 제출 시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불합격통지서 또는 위험·보수 판정 통지서 사본 첨부

- 관리감독기관의 시설개선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 20일 이내 보완

⇨ **시설개선 완료 후 검사신청은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검사기관에 하여야 함.**
단, 해당검사기관이 영업정지 등으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다른 검사기관에서 신청가능

FAQ

문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아파트 놀이시설을 장기간 ‘이용금지 상태’로 두어도 되나요?

답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시설의 경우 이용금지 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해야하고,

그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놀이시설 시설개선계획서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시설계획서 상의 보수완료 시기까지만 이용금지가 가능합니다.

■ 검사판정에 대한 이의 및 재검사 요청

- 요청기한 :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검사기관 :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검사기관(단, 해당 검사기관이 영업정지 등으로 검사가 불가능 할 경우 다른 검사기관에 신청 가능)
 - ※ 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재검사 실시
- 신청양식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재검사 합격에 따른 이용금지의 해제

- 요청시기 : 재검사 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직후 ~ 운영 시작 전
- 해제방법 : 시설물에 부착된 이용금지 표식 및 차단시설을 제거 후 관리감독 기관에 유선 등*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상 ‘이용금지’를 ‘운영’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

* 별도서식은 없음(관리감독기관은 안전검사 합격여부를 확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1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1

1 어린이놀이시설 보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법 제21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보험가입) ①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입주체 : 관리주체*

* 설치자가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놀이시설을 이용금지 조치 안하고 운영할 경우 설치자가 관리주체로서 가입을 해야 함

- #### ■ 가입기한 : 1. 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2.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로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에 통보를 하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는 날의 전날까지

※ 이후 놀이시설의 운영을 지속한다면 보험기간만료 전까지 지속 갱신해야 함

■ 보험의 종류

- (원칙)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 어린이놀이시설이 법상 안전관리기준을 갖추지 못한 결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관리주체가 배상 가능

- (예외) 다른 시설과 함께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한 경우 어린이놀이 시설 사고배상책임특약을 추가

*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등 가입한 다른 보험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배상요건, 배상금액 등을 충족하고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대체 가능
 → 단, 보험사로부터 가입한 보험이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증명을 받아야만 함
 ※ 배상관련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음

■ **보험의 보상한도액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7**

FAQ

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실내에 설치된 작은 미끄럼틀이나 그네도 설치검사를 받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

답 해당 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인 **어린이놀이기구라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설치검사 및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나,

해당 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인 **완구라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놀이기구 VS 완구]

구분	어린이놀이기구	완구
안전확인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설치방법	설치업자가 설치	개인이 구매 설치가능
고정여부	주로 고정식	주로 이동식
설치장소	학교, 공원 등 공공장소	어린이집, 가정
예시	 	 

※ 안전인증 대상제품의 분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업무이므로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

2 안전관리자 지정 (법 제20조)

- **지정권자** :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놀이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놀이시설을 상시 점검 관리할 수 있다면 직접 안전관리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 **자격요건** : 별도 요건은 없으나 실제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안전점검, 시설관리, 중대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에게 연락 또는 관리감독기관에 신고 등

■ 안전관리자 지정 통보

- 관리주체(또는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가 지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에 안전관리자 지정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학교·학원, 유치원의 경우 교육지원청, 그 외에는 해당 시·군·구청

※ 통보방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 등록 후 관리감독기관에 유선으로 승인 요청

FAQ

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신청 화면에서 “안전관리자 지정일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전교육을 받은 일자를 입력하면 되나요? 안전교육을 받은 일자를 입력하면 될까요?

답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경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시스템으로 신고 시 “안전관리자 지정일자”는 안전교육을 받은 일자가 아닌 안전관리자 업무를 시작한 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후 안전관리자는 지정받은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문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로 지정된다면 관리감독기관에 별도 통보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한 경우 15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가 돼도 예외사항에 속하지 않으며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면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안전교육의 실시 (법 제20조)

■ 교육이수

- 안전관리자는 하단의 기간 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2년에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시기

- 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 인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 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 * 만료일 3개월 전 ~ 만료일 사이 교육 → 직전 교육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유효기간 산정 (교육 이수일과 교육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다를 수 있음)
- 이용금지의 경우
 1.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했을 것
 2.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을 것
 - 1, 2를 모두 충족하였을 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는 날의 전날까지 교육을 받으면 됨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 기관별 교육일정, 장소 등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고객 참여마당-안전교육일정(오프라인) 참조
- ** 온라인 교육 가능한 교육기관은 고객참여마당-안전교육일정(온라인) 참조

■ 교육의 효력 : 안전관리자 개인에 귀속

- A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 나안전(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남음)이 B놀이시설 안전관리자로 이직하고 A놀이시설에 안전관리자 송안전(안전교육 실적 없음)이 온 경우 → 나안전은 유효기간 만료전까지 교육 불필요, 송안전은 교육 필요

■ 교육실적의 등록 : 교육기관이 시스템에 등록

- 안전관리자가 다른 놀이시설 안전관리자로 이직한 경우에도 교육기관이 시스템에 변경 등록*

* 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기관에 변경 등록을 요청해야 하나 자신이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잊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을 받은 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합격 증빙서류와 연락처 등을 받아 보관하도록 한다.

FAQ

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교육 결과를 안전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결과는 교육기관(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직접 안전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므로, 관리주체는 별도로 시스템에 입력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결과가 입력되지 않았을 경우 교육기관에 입력을 요청하면 됩니다.

4 안전요원 배치 의무

- **적용대상** :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
- **배치기간** :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 가동기간
 - *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안전관리자와는 달리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은 물이용 놀이시설이 가동되는 시간에는 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함
- **배치인원** : 1명 이상
 - * 법상 의무는 1명 이상이나, 시설면적에 따라 적정인원의 안전요원 배치 권장 (추가 배치된 안전요원은 법령상 자격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님)
- **안전요원 미배치** : 안전요원은 물이용놀이시설이 가동되는 동안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는 법적의무 사항이고 배치가 안되거나 자격요건에 맞지 않은 안전요원 배치 시 과태료 부과 사항임

5 안전요원의 자격요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 취득자**
 - 자격명칭 : 수상안전요원 (그 외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발급 자격증은 불인정)
 - 자격종류 : 민간자격증
 - 교육기관 :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 취득요건 : 교육기관 교육 후 자격시험에 합격 (교육이수만 한 것은 불인정)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호에 따른 자격증 취득자**
 - 취득요건 : 교육기관 교육 후 자격시험에 합격 (교육이수만 한 것은 불인정)

자격증 종류		자격취득요건
민간 자격증	인명구조요원 (문의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13개 지정기관에서 교육 후 민간자격증 시험 ※ 자격 취득 후 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 이수해야 자격유지
민간 자격증	래프팅가이드 (문의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5개 지정기관에서 교육 후 민간자격증 시험 ※ 자격 취득 후 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 이수해야 자격유지
국가 자격증	수상구조사 (문의 :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32개 지정기관에서 교육 후 국가자격증 시험 ※ 자격 취득 후 2년마다 보수교육(8시간) 이수해야 자격유지

(2019. 7. 12. 기준)

연번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1	대한적십자사
2	(재)한국YMCA전국연맹
3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4	(사)대한인명구조협회
5	(사)수상인명구조단
6	(사)한국해양구조협회
7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8	(사)한국구조연합회
9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10	(사)대한수중핀수영협회
11	(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12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13	대한안전연합

연번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
1	(사)대한래프팅협회
2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3	(사)한국YMCA전국연맹
4	(사)대한인명구조협회
5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연번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1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2	대한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3	한서대학교
4	수상구조대
5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6	(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7	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8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9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남 동부지부
10	(사)대한안전연합
11	한국해양대학교
12	한국해양구조협회
13	(사)한국해양안전교육협회
14	대한수중핀수영협회
15	(사)한국잠수협회
16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17	부산소방학교
18	서울 YMCA
19	한국해양구조협회 서울지부
20	한국해양안전협회
21	국민안전교육진흥회
22	대한인명구조협회
23	경기소방학교
24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25	NASE KOREA 수원시 수중핀수영협회
26	한국수상안전협회
27	대한적십자사 대선세종지사
28	해양경찰교육원
29	대한구조협회
30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부산지구
31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32	제주 YMCA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교육기관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이라는 명칭은 없지만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

■ 국가, 지자체, 대한적십자사의 응급처치 관련 교육 8시간 이수한자

- 교육기관 : 소방서, 보건소, 대한적십자사 등

FAQ

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의 자격요건 중 국가, 지자체, 대한적십자사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이 4시간만 있는데 같은 교육을 받아도 되나요?

답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시간에 대한 규정(8시간이상)은 있지만 동일교육·동일한 내용의 반복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복하여 교육을 이수할 경우도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을 같이 교육하는 12시간 수업을 권고하고 있음.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2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2

I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 금지·폐쇄·철거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주체** :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또는 서면계약에 의하여 관리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

* 서면계약을 통해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음
단, 안전점검은 유지관리에 해당하므로 안전검사기관이 안전점검업무와 안전검사를 병행하는 것은 검사의 공정성 확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점검 용역 수행이 불가능 하며, 점검용역을 수행하는 법인의 조직일부이어서도 안됨

■ **점검주기** : 월 1회 이상(의무)

* 점검항목에 따라 매일 점검할 것을 권장하도록 교육

■ **점검항목** :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호) 별표2의 안전점검항목

■ **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 안전점검실시대장(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 ⇨ 법정서식 준수

※ 법정서식이 아닌 편집된 서식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 3년간 보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1.27.>

안전점검실시대장(제17조 관련)

점검일	점검 결과				특이사항	안전관리자(인)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구분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결과
		권고	의무	
부대시설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매일	월간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	매일	월간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매일	월간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1주	월간	
놀이터 공통사항	▪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1주	월간	
	▪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매일	월간	
	▪ 놀이터내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등 위험물질 존재	매일	월간	
	▪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2주	월간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적재 및 입구의 주차 상태	매일	월간	
	▪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매일	월간	
	▪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매일	월간	
▪ 기구 및 시설의 도장 상태	2주	월간		
그네	▪ 그네고리('S' 혹)의 풀림 및 파손	매일	월간	
	▪ 그네 좌석판의 파손	매일	월간	
	▪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매일	월간	
	▪ 그네 줄의 꼬임	매일	월간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1주	월간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매일	월간	
	▪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여부, 추락시 상해위험 장애물 존재	매일	월간	
그네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매일	월간	
	▪ 금속재질의 녹 발생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의 존재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1주	월간	
	▪ 볼트나 나사의 풀림	매일	월간	
미끄럼틀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1주	월간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1주	월간	
	▪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1주	월간	
	▪ 착지판에 흙 및 물의 존재	매일	월간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매일	월간	

구분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결과
		권고	의무	
	▪ 금속 재질의 녹 발생 상태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의 존재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1주	월간	
	▪ 볼트나 나사의 풀림	매일	월간	
흔들 놀이기구	▪ 시소의 무게 균형 상태	매일	월간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1주	월간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1주	월간	
	▪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1주	월간	
	▪ 손잡이가 흔들림	1주	월간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일	월간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1주	월간	
	▪ 기구의 금이 간 곳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칠음	매일	월간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일	월간		
회전 놀이기구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2주	월간	
	▪ 손잡이의 파손	매일	월간	
	▪ 회전판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1주	월간	
	▪ 회전축의 파손, 기울어짐, 흔들림	1주	월간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1주	월간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일	월간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의 존재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칠음	1주	월간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일	월간		
정글짐· 건너는 기구	▪ 파이프가 휘어짐	1주	월간	
	▪ 금속부분의 녹슴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의 존재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칠음	1주	월간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일	월간		

구분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결과
		권고	의무	
오르는 기구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매일	월간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매일	월간	
	▪ 지지대가 느슨해졌는 지 여부	매일	월간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일	월간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의 존재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칠음	1주	월간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일	월간	
건너는 기구 · 공중 놀이기구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1주	월간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일	월간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1주	월간	
	▪ 금이 간 곳의 존재	매일	월간	
	▪ 페인트 칠이 벗겨짐	2주	월간	
	▪ 돌출부나 거칠음	1주	월간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일	월간	
물이용 놀이기구	▪ 급·배수 상태(물공급 노즐, 오버플로우, 배수구 등)	매일	월간	
	▪ 매달려 있는 구동구조물 상태(베어링, 이중안전장치 등)	2주	월간	
	▪ 미끄럼방지 조치 상태(테옌, 매트 등)	1주	월간	
	▪ 수질오염 상태(부유물질 등)	매일	월간	
	▪ 기초부, 연결부 등의 물고임 및 부식 상태	매일	월간	

※ 위 항목은 안전관리자가 아무런 서식 없이 안전점검을 할 경우 어떠한 것을 보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시에 따로 항목을 정한 것임(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별표 2의 서식으로 3년간 보관 의무는 없음)

2 안전진단

■ 실시요건

-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관리주체가 스스로 보수, 철거, 개선 등을 할 경우 안전진단 생략 가능

■ 진단기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기관 중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삭제)

■ 신청 시 제출서류

- 안전진단신청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진단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진단을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시설의 재사용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진단결과와 관리감독기관에 통보는 진단을 실시한 안전검사기관이 함

■ 진단결과 등의 기록 보관

- 안전진단실시대장(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을 작성하여 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

Ⅱ 이용금지, 폐쇄 및 불합격시설에 대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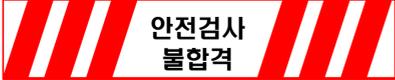
1 놀이시설의 이용금지

■ 이용금지를 해야 하는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사 완료 후 설치검사 합격 전까지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 내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 놀이시설 보수 및 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경우
-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정 받은 경우

■ 놀이시설의 출입차단

- 놀이시설입구에 이용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

<p>이용금지</p> <p>본 시설은 안전기준에 미달되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이용금지된 시설로서 안전검사 합격 시까지 시설물 이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오니, 임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자와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p> <p>○○유치원장 ○○○ (문의전화 : 02-123-1234)</p>	 
이용금지 안내판(예시) (1m×1m)	봉쇄 테이프(예시)

■ 놀이기구의 이용금지

- P40~43 이용금지 내용 참조

■ 이용금지 조치를 안했을 경우

- 법 제29조(벌칙)에 관련된 사항으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FAQ

문 아파트 놀이시설에 어린이 놀이기구가 5개 정도 되는데 한 개만 부적합 판정이 나서 이용금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개의 기구에만 이용금지를 하면 되나요?

답 어린이놀이기구는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시행할 때 각각의 기구별로 검사를 받는게 아닌 하나의 놀이터 전체를 시설로 판단하여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이기구 하나만 불합격 판정이 나서 이용금지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놀이터 전체에 대한 이용금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대로 이용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어린이들이 이용하다 사고가 날 시에 법적 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놀이시설에 대한 영구폐쇄

■ 영구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 공간 내에 있는 모든 놀이기구를 실제 철거하고 향후 놀이기구의 설치 및 놀이시설 조성·운영 계획이 없는 경우

주의

장기간 놀이시설을 이용금지 상태로 두거나,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놀이기구를 철거하는 경우는 놀이시설 폐쇄에 해당하지 않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상 영구폐쇄를 하면 기존내역이 복구되지 않음**. 이런 경우 아래와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사례) 어린이집 운영자가 더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어 2012년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영구폐쇄를 요청(어린이집을 운영안할 뿐이지 놀이시설을 폐쇄한 것은 아님). 담당공무원이 놀이시설의 실제 철거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시스템상 놀이시설을 영구폐쇄로 조치. 이후 어린이집을 다른 이가 인수하여 어린이집의 놀이시설을 다시 운영하려고 할 경우 시스템상 기존 놀이시설정보가 복구되지 않음. 이에 따라 등록번호를 새로 발급받아 정기시설검사가 아닌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게 됨

⇒ 이 경우 인증서 재발급 문제(만약, 업체가 도산했거나 단종모델이면, 관리주체가 직접 인증을 받아야 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검사 시 2007년 최초 설치시의 기준이 아닌 현행기준이 적용되어 불합격할 가능성이 있음

■ 영구폐쇄 조치방법

- 실제 놀이기구를 모두 철거한 후 관리감독기관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상 해당시설을 영구폐쇄로 바꿔줄 것을 요청
- 담당공무원은 현장방문 또는 현장사진 제출을 요청하여 사실 확인 후 시스템에서 해당시설을 영구폐쇄로 전환(사실확인 없이 관리주체에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담당공무원에게 법적책임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3 불합격시설의 조치

■ 놀이시설의 이용금지 : 상기 이용금지 방법과 동일

■ 검사결과 불복에 따른 재검사 신청

-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해당검사기관(불합격을 통보한 검사기관)에 재검사 신청 가능
- 검사기관은 재검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재검사결과를 통보해야 함

■ 시설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 단, 2개월 이내 시설 개선 등을 완료한 경우 시설계획서 제출안해도 됨
- 제출처 : 관리감독기관(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지원청)
- 계획서의 내용
 - 시설개선 대상 및 시설개선 사유별 개선조치 내용
 - 시설개선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 시설개선의 추진 일정

Ⅲ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지정제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관리주체들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을 선정하여 인증판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관리주체는 1회에 한하여 안전교육이 면제된다. 신청 시기, 방법 등은 하단을 참조한다.

1 추진배경

- 어린이안전에 대한 국민관심 제고 및 안전한 놀이공간 확산
- 안전한 놀이공간 표준모델 제시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2 제도개요

■ **신청기간** : 매년 7~8월경 (약 2주~3주간)

■ **신청부분** : 개방형 (주택단지, 도시공원 등), 독립형 (어린이집, 유치원 등)

※ 놀이시설을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하고 있는 지 여부로 구분

■ **신청대상 및 요건**

- (신청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
- (신청요건)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시설로서, 관리주체 의무 이행(안전검사, 보험가입, 교육이수 등) 완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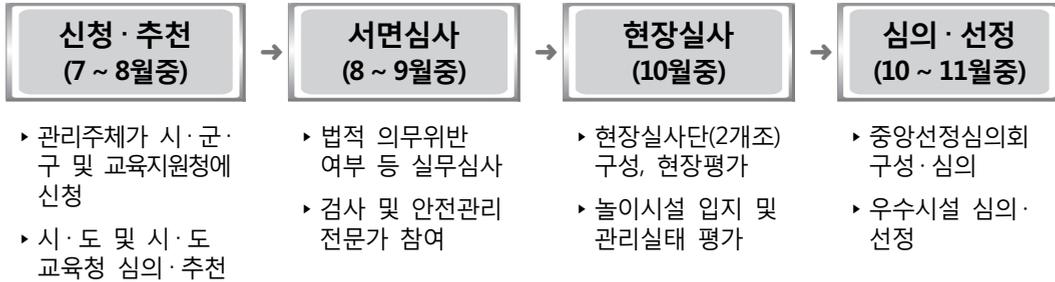
※ 매년 9월경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시·도교육청)에 우수 놀이시설 추천요청 공문 발송하고 있으며, 관리주체가 해당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에 신청

■ **지정규모** : 10개소 내외 선정

주의

우수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시설물에 한해서 선정되므로 기구적 요건과 장소적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여 신청

3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선정 절차



4 선정기준

■ 기본방침

- 개방형(주택단지, 도시공원 등)과 독립형(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 구분·심사
- 놀이기구 중심의 안전성 위주에서 다양한 놀이문화와 세대간 참여, 열린 공간을 지향하는 디자인과 융합된 안전성(CPTED) 고려
 - 아동 연령을 고려한 동선 배치 및 지형 활용,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놀이 공간 등 반영 여부

■ 심사항목

- 개방형(5개 분야 20개 항목) : 주택단지, 도시공원 등

구분	배점	항목	심사 항목
안전관리실태	30점	5	▶ 놀이기구의 안전성, 하강공간 확보여부, 바닥상태 ▶ 안전정보 제공노력(이용수칙, 비상연락망, 보험안내)
유지관리·운영	30점	5	▶ 청소 및 위생상태, 부대시설(cctv, 부모쉼터 등) ▶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일지 및 보수이력 등
아동발달연계	15점	4	▶ 아동발달 정도에 적합한 놀이기구, 다양성, 창의놀이감 ▶ 이용자 연령 적합성, 뛰노는 공간이 충분한 지 여부
안심디자인	15점	4	▶ 주변입지의 안전성, 열린공간 지향, 연령고려 공간배치 ▶ 시각적 요소(3색이상 반영여부), 차광시설 설치여부 등
공동체활성화	10점	2	▶ 다양한 세대가 이용가능한 놀이공간 마련 여부 ▶ 보호자가 이용하거나 쉴 수 있는 공간설치 여부

○ 독립형(4개 분야 18개 항목)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구분	배점	항목	심사 항목
안전관리실태	30점	5	▶ 놀이기구의 안전성, 하강공간 확보여부, 바닥상태 ▶ 안전정보 제공노력(이용수칙, 비상연락망, 보험안내)
유지관리·운영	30점	5	▶ 청소 및 위생상태, 부대시설(cctv, 부모쉼터 등) ▶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일지 및 보수이력 등
아동발달연계	20점	4	▶ 아동발달 정도에 적합한 놀이기구, 다양성, 창의놀이감 ▶ 이용자 연령 적합성, 뛰노는 공간이 충분한 지 여부
안심디자인	20점	4	▶ 주변입지의 안전성, 열린공간 지향, 연령고려 공간배치 ▶ 시각적 요소(3색이상 반영여부), 차광시설 설치여부 등

5 우수어린이놀이시설 인센티브 및 선정취소

■ 인센티브

- 인증서(유효기간 3년) 및 인증판 제작 수여
- 안전교육 의무면제(1회) : 선정 후 최초로 도래하는 안전교육 시 적용
* 안전관리자 교육의무는 2년마다 발생

■ 선정취소

- 유효기간(3년) 도래 및 중대사고, 행정처분 등 부적합 사유 발생 시

선정취소 사유

-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소홀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명분 상실
- ▶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의무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때
 -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미이행 또는 불합격한 시설의 이용
 - 기타 안전점검(매월) 미시행, 보험 미가입, 교육의무 위반 등
- ▶ 관리소홀로 인해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 ▶ 기타 관리주체 및 해당시설이 타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형사처분을 받은 때

관리감독기관의 임무 및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



관리감독기관의 임무 및 법령 위반에 대한 벌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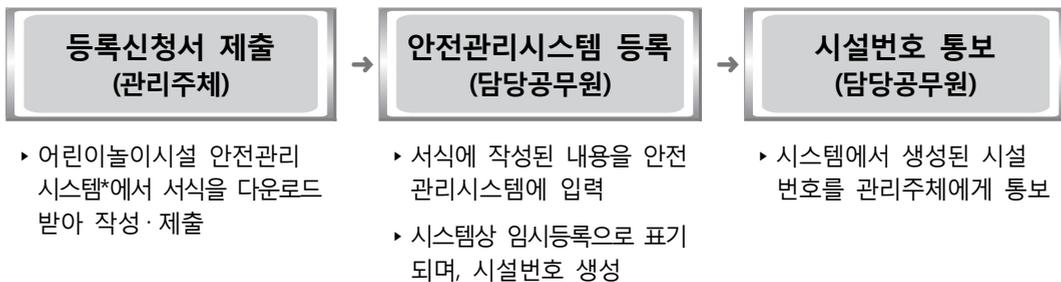
I 어린이놀이시설의 등록·변경 등

1 등록·변경

■ 시설별 처리기관

- 학교, 유치원 및 학원 : 교육지원청
- 그 외(주택단지, 도시공원, 어린이집 등) : 시·군·구

■ 처리절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www.cpf.go.kr) > 정보마당 >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신고서

설치자 (관리주체)	성명	사무실 전화	※ 핸드폰 번호 입력 불가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분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설명	○○아파트 101동 옆 놀이시설 ※ 동일주소에 복수의 놀이시설이 있는 경우 구체적 위치 (예, 101동 옆) 표시 요망		
	도로명 주소	우편번호, 주소 등 구체적으로 기재 ※ 도로명 주소가 없을 경우 지번주소 기재		
	설치장소	주택단지, 도시공원, 어린이집, 식품접객업소, 목욕장업소, 대규모점포, 놀이제공업소, 학교,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장소 중 선택 *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키즈카페는 놀이 제공업소로 등록	의무여부	의무 또는 비의무 중 선택 ※ 개별 법령에 어린이놀이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우 의무, 그 외는 비의무
	민간/ 공공구분	민간시설 또는 공공시설 중 선택	설치일자	yyyy년 mm월 dd일
	실내·외 구분	실내 또는 실외 중 선택	물놀이형 놀이기구	포함 또는 미포함 중 선택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서식이 신설되기 전까지 임의 서식으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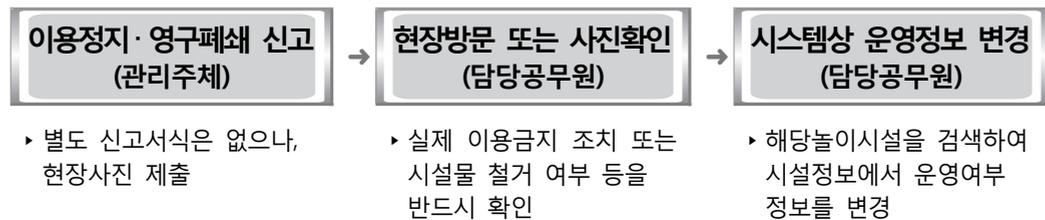
2 이용금지 및 영구폐쇄

■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 p64 참조

■ 영구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 p66 참조

<주의> 시스템상에서 영구폐쇄로 할 경우 모든 정보가 삭제되고 삭제된 정보는 복원이 안되므로 실제로 놀이시설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철거가 되고 관리 주체가 놀이시설을 다시 설치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영구폐쇄 할 것

■ 처리절차



3 놀이기구의 추가등록 및 삭제

■ 추가등록 방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기본정보 관리>놀이시설 관리>시설검색>놀이시설명 클릭>놀이기구 탭 이동>기구등록>저장하기

■ 삭제 방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기본정보 관리>놀이시설 관리>시설검색>놀이시설명 클릭>놀이기구 탭 이동>삭제할 놀이기구명 클릭>수정하기 클릭>폐기일자 입력>저장하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놀이시설의 등록·추가등록, 수정 및 변경은 관리감독기관에서 확인하여 변경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의 장애 복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관리하므로 놀이시설의 등록 등과 같은 문의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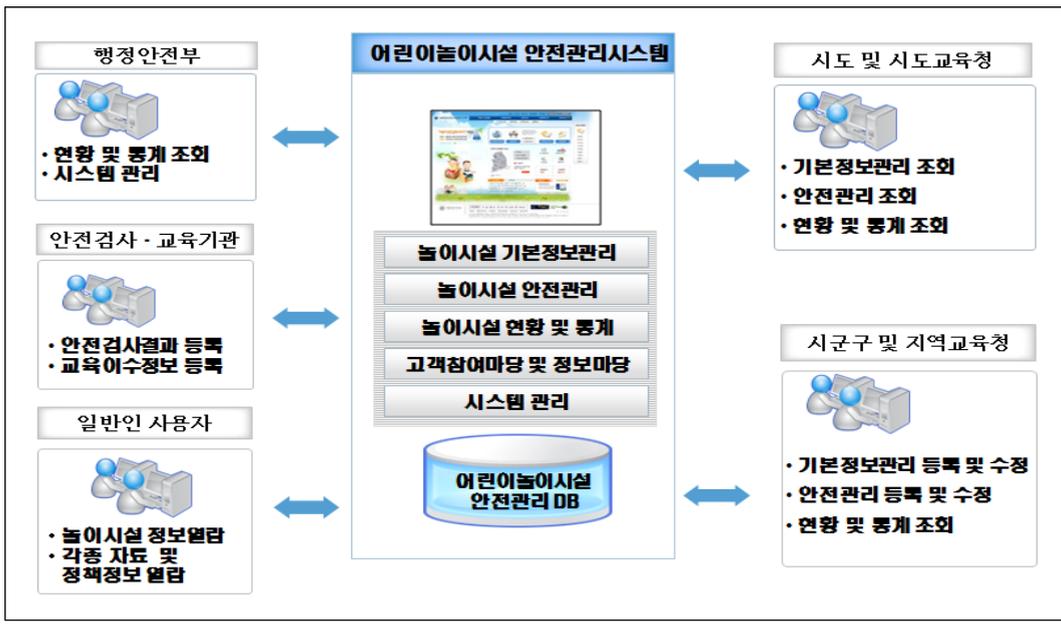
■ 운영근거 (법 제19조의2)

- (구 축) 행정안전부
- (운영) 지자체(교육지원청 포함), 검사기관, 교육기관이 정보등록 및 관리

■ 운영개요

- (홈페이지) 인터넷 www.cpf.go.kr
- (관리정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현황, 안전검사,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등 안전정보 및 통계 등 현황 관리
- (관리주체) 업무단위별 역할 분담
 - (행정안전부) 시스템 운영 총괄, 각종 정책현안 전파 등에 활용
 - (자치단체)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시설관련 기본정보 등록, 안전상황 관리
 - (유관기관) 안전검사, 보험가입, 교육이수 여부 등을 입력·관리

■ 시스템 구성



Ⅱ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1 지도·점검계획의 수립

■ **관련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의2

■ **작성기한** : 매년 1월 31일까지

■ **작성내용**

- 점검대상 어린이놀이시설(물이용 놀이시설 포함)*
 - * 사고발생 빈도 및 검사 불합격 이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위험요소별 점검항목
 - 어린이놀이기구별 안전기준 준수여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의무 준수여부
(안전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점검대장 작성 및 보관,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 가동 시 안전요원 배치 및 자격 준수 등)
-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 참여방안
 - * 안전검사기관, 안전관리지원기관 등
- 지도·점검 결과의 후속조치 이행방안
- 그 외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2 점검계획의 통보

- **통보기한** : 지도·점검하려는 날로부터 7일전(원칙)
 - * 긴급한 경우 지도·점검을 하려는 날 전날까지
- **통보방법** : 서면(원칙) 또는 구두(긴급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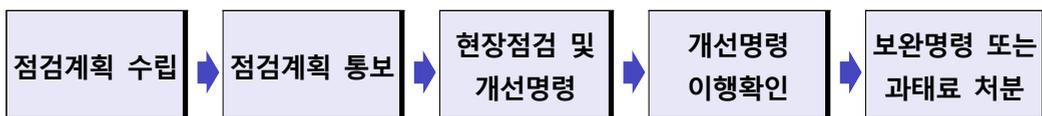
3 지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 개선명령

-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지도·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음
 - * 정한 기간 내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소범위 내 연장 가능
-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시설개선 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함
- 이행여부 확인·점검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을 명하여야 함

■ 과태료 처분

- 상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주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가능
 - 처분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3의2호
 - 상한기준 : 1회 50만원 / 2회 100만원 / 3회 500만원
 - ※ 시행령 별표9 '1. 일반기준 / 나 목에 따라 1/2의 범위내에서 감경 가능
 - *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같은 건에 대하여 반복부과 가능



Ⅲ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등

1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

■ 지정요건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별 전담기구로 구성된 조직체계를 갖출 것
 - 다음의 인력을 각각 갖출 것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상담 업무를 수행한 자** 2명 이상
- *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의미
- ex)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안전관리지원기관, 놀이기구 제작·설치·유지보수업체 등 (전담인력의 근무경력은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지 않음)
- ※ 아파트관리사무소, 학교 등은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 단체로 보기 곤란
- ** 해당기관에 단순히 재직한 것이 아니라 실제 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연구 또는 상담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실제 업무수행여부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고, 해당 기관에 근무경력 사실 확인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을 권장

상기 경력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인력이 많지 않다는 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 제18조가 안전관리지원기관 '설립 인·허가'가 아닌 '지정'으로 되어 있는 취지는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새로 '설립'하기 위한 기준이 아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 중에서 '지정'하기 위함임.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경험이나 연구 실적이 쌓인 기관을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법상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수행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경력요건을 엄격히 심사할 필요

-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위해·위험의 예방업무를 전담하는 자 1명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업무를 전담하는 자 1명
 - 피해보전사업 관련 업무 및 통계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자 1명
- ⇒ '전담하는 자'는 해당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된 자를 의미

■ 신청시 제출서류

-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 사업계획서
-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요건(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2 안전관리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 관리감독 :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

■ 점검사항

- 조직·인력 등 지정요건 준수 여부
-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성(필수 교육시간(4시간) 준수 여부)

■ 후속조치

- 지정요건 위반 → 지정취소 가능
- 부적절한 교육과정 운영 → 시정요구

IV 중대사고 보고

1 중대사고의 정의

■ 중대사고의 정의

- 놀이시설 내 놀이기구(바닥재 포함)를 이용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서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를 어린이로 한정하지 않음(놀이기구 이용으로 인해 성인이 사고를 당한 경우도 포함, 단, 시설과 무관한 사고(폭행, 자전거와의 충돌, 힐리스를 타던 중 넘어진 경우 등)는 해당되지 않음)

■ 중대사고의 종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 | | |
|-------------------------------------|----------------------|
| 1. 사망 | 5. 출혈이 심한 경우 |
| 2. 3명 이상 동시 부상 | 6. 신경·근육 또는 힘줄 손상 |
| 3.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48시간 이상의 입원치료 필요 | 7. 2도 이상 화상 |
| 4. 골절상 | 8. 부상면적이 신체표면의 5% 이상 |
| | 9. 내장이 손상된 경우 |

■ 종류별 중대사고의 적용기준

- 사망, 48시간 이상 입원, 신경·근육 또는 힘줄 손상, 2도 이상 화상, 신체표면 5% 이상 부상 : 진단서 및 관계서류 등에 따라 처리
- 골절상 및 내장 손상 : 모든 골절상(치아골절 포함) 및 내장손상
- 3명 이상 동시 부상 : 시행령 별표7 '2. 부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상
- 출혈이 심한 경우 :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출혈

2 중대사고의 처리

■ 사고접수 및 현장조사

- 사고원인,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내용, 놀이시설의 이용중지 여부 등을 확인
 - ※ 현장조사 시 피해부모의 심정 등을 헤아려 적극적인 조사 실시 필요(아이가 다친 사고가 발생했는데 담당공무원은 나와 보지도 않고 관리주체 편을 든다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

■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작성

■ 시스템 사고정보 등록 및 사고조사 보고서 공문 제출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접속 > 기본정보 > 놀이시설관리 > 놀이시설 검색 > 해당놀이시설명 클릭 > 안전사고 탭 > 등록하기 클릭 > 사고정보 입력
-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경우에도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한 벌칙

1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철거명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자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받은 자
-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FAQ

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시설을 이용토록 함으로 인해 부과되는 벌금이 1천만원 이하로 시설개선비보다 적은데, 벌금을 납부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답 일반적으로 행정벌의 적용에 있어서 의무위반 시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형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계속하여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약식명령 발령시를 기준하여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 **계속적으로 새로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가 있고, 또한 계속해서 법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이후에는 더 무거운 형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게 일반적 경향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50	100	500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의2	50	100	500
다.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40	80	400
라.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의2	40	80	400
마.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30	60	200
바.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의2	50	100	500
사.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30	60	200
아.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5호	30	60	200
자. 법 제22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6호	30	60	200
차.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7호	30	60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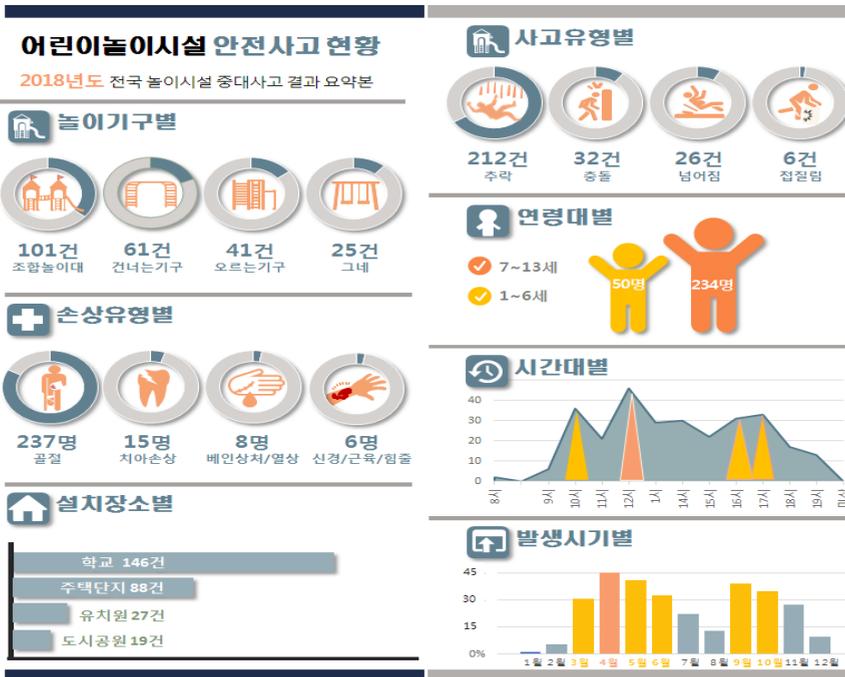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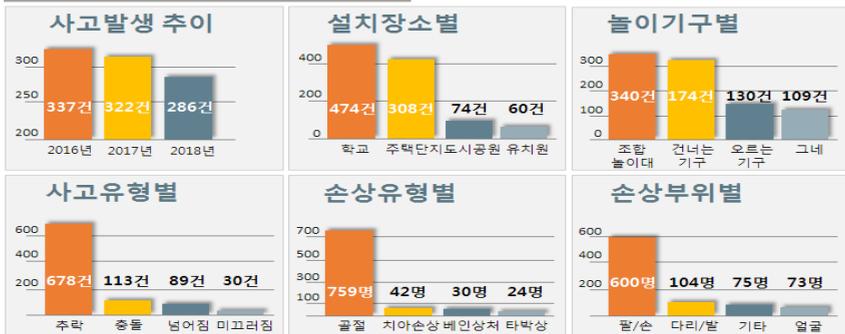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I 2018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현황



최근 3년간('16~'18) 안전사고 현황



- 2018년 중대한 사고는 286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 이 중 시설물 하자에 의한 사고는 연평균 약 3건(1%)이고, 나머지 99%는 이용자 부주의에 의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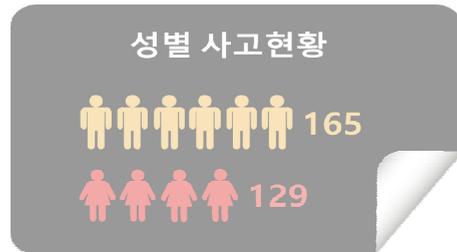
Ⅱ 안전사고의 유형별 분석

1 성별 사고발생 현황

- 성별 안전사고 부상자를 살펴보면, 전체 294명 중 활동량이 많은 남자어린이가 165명(56.1%)으로, 여자어린이 129명(43.9%)보다 부상자 수가 약 1.3배 많음

[성별 사고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남자	여자
부상자수	294	165	129
비율	100.0%	56.1%	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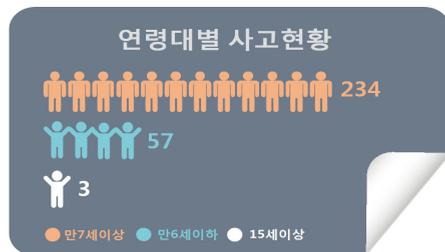


2 연령별 사고발생 현황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활동량이 많은 학령기(7~14세) 어린이가 234명(79.6%)으로, 취학전(1~6세) 어린이 57명(19.7%)보다 부상자 수가 약 4.1배 많음

[연령대별 사고현황] (단위 : 명)

구분	부상자수	비율
계	294	100%
1~6세(취학전)	57	19.4%
7~14세(학령기)	234	79.6%
15세 이상	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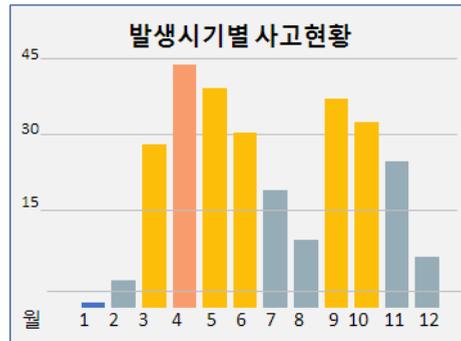
3 발생시기별 사고현황

- 사고발생 시기는 야외 활동에 적합한 4~5월과 9~10월이 전체 사고의 절반 가량(152건, 53.0%)을 차지하였으며,
 - 다음으로 6월 31건(10.8%), 3월 29건(10.1%)의 순으로 나타남

[발생시기별 사고현황]

(단위 : 건)

구분	사고건수	비율
계	286	100%
1월	1	0.3%
2월	5	1.7%
3월	29	10.1%
4월	43	15.0%
5월	39	13.6%
6월	31	10.8%
7월	21	7.3%
8월	12	4.2%
9월	37	12.9%
10월	33	11.5%
11월	26	9.1%
12월	9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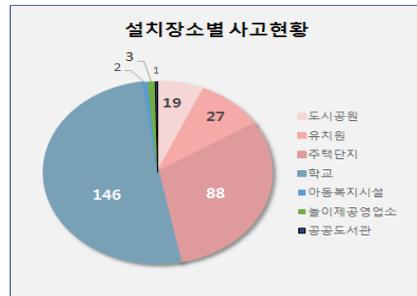
4 설치장소별 사고현황

- 설치장소별 사고건수는 학교가 146건(51.0%)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택 단지가 88건(30.8%), 유치원 27건(9.4%), 도시공원 19건(6.6%), 놀이제공업소 3건(1.0%), 공공도서관 1건(0.3%) 순임
- 시설 수 대비 사고건수 비중은 공공도서관(3.4%), 학교(2.3%), 놀이제공업소 (0.4%) 순으로 분석됨

[설치장소별 사고현황]

(단위 : 건)

구분	시설수	사고건수	전체사고건수대비	시설수 대비
계	73,569	286	100%	0.39%
주택단지	36,864	88	30.8%	0.2%
도시공원	10,040	19	6.6%	0.2%
유치원	7,752	27	9.4%	0.3%
학교	6,393	146	51.0%	2.3%
놀이제공업소	856	3	1.0%	0.4%
아동복지시설	263	2	0.7%	0.8%
공공도서관	29	1	0.3%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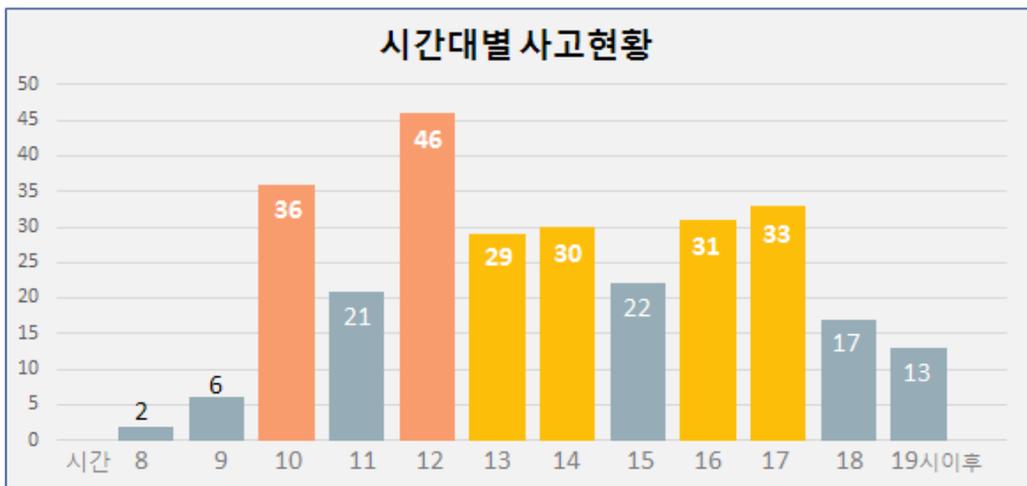
5 시간대별 사고현황

- 사고발생 시간은 12~13시가 46건(1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11시 36건(12.6%), 17~18시 33건(11.5%) 순으로 나타남
- 특히, 바깥활동이 많은 오후 시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12~13시는 학교에서, 16~19시는 주택단지에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

[설치장소에 따른 시간대별 사고현황]

(단위 : 건)

구분	사고 건수	비율	주택 단지	도시 공원	유치원	학교	놀이 제공	아동 복지	공공 도서관
계	286	100%	88	19	27	146	3	2	1
오전	8-9시	2	0.7%	-	-	-	2	-	-
	9-10시	6	2.1%	-	1	-	5	-	-
	10-11시	36	12.6%	4	-	3	29	-	-
	11-12시	21	7.3%	3	-	5	12	-	1
오후	12-13시	46	16.1%	2	3	-	41	-	-
	13-14시	29	10.1%	3	-	4	21	1	-
	14-15시	30	10.5%	7	1	5	16	1	-
	15-16시	22	7.7%	4	1	6	10	-	1
	16-17시	31	10.8%	19	2	2	6	1	1
저녁	17-18시	33	11.5%	22	6	2	3	-	-
	18-19시	17	5.9%	15	2	-	-	-	-
	19시이후	13	4.5%	9	3	-	1	-	-



6 지역별 사고발생 현황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1건(52.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부산 59건(20.6%), 세종 12건(4.2%), 충남 9건(3.1%) 순임
- 시설수 대비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곳은 세종(1.7%), 부산(1.5%), 경기(0.8%), 울산(0.4%), 제주(0.4%) 순으로 나타남

[지역별 사고현황]

(단위 : 개소, 건)

구분	전체 시설수(개소)	사고건수(건)	사고건수 대비	시설수 대비
계	73,569	286	100%	0.39%
서울	9,803	6	2.1%	0.1%
부산	3,943	59	20.6%	1.5%
대구	3,405	5	1.7%	0.1%
인천	3,854	5	1.7%	0.1%
광주	2,475	1	0.3%	0.0%
대전	2,089	2	0.7%	0.1%
울산	1,830	7	2.4%	0.4%
세종	722	12	4.2%	1.7%
경기	19,616	151	52.8%	0.8%
강원	2,784	3	1.0%	0.1%
충북	2,763	2	0.7%	0.1%
충남	3,608	9	3.1%	0.2%
전북	3,148	4	1.4%	0.1%
전남	3,072	1	0.3%	0.0%
경북	4,270	8	2.8%	0.2%
경남	5,201	7	2.4%	0.1%
제주	986	4	1.4%	0.4%

- 최근 3년간 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2018년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서울이 11건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세종은 10건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5배가 늘어남

[지역별 사고발생 추이]

(단위 : 건)

년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6	338	20	17	9	14	5	6	3	1	137	22	14	8	7	3	9	42	20
2017	322	15	56	13	12	1	0	7	2	150	11	4	8	6	0	13	11	13
2018	286	6	59	5	5	1	2	7	12	151	3	2	9	4	1	8	7	4
전년 대비	▽36	▽11	△3	▽8	▽7	-	△2	-	△10	△1	▽8	▽2	△1	▽2	△1	▽5	▽4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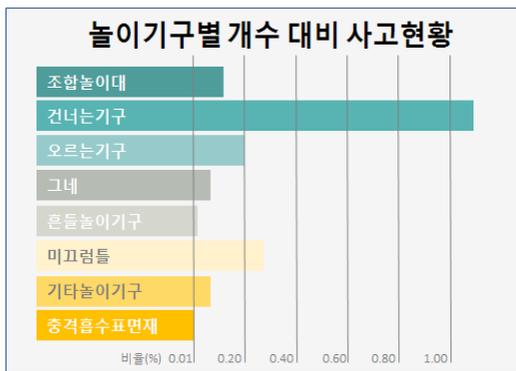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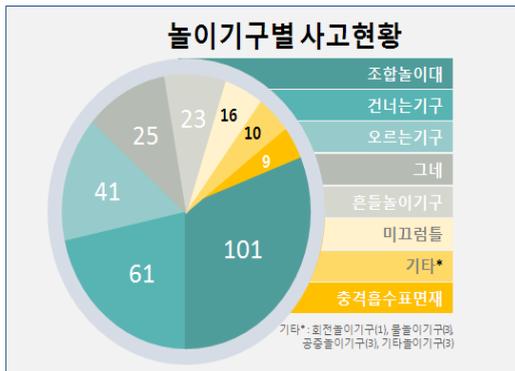
7 놀이기구별 사고발생 현황

- 놀이기구별 사고건수는 조합놀이대가 101건(3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너는기구 61건(21.3%), 오르는기구 41건(14.3%) 순이며, 바닥재로 인한 사고도 9건(3.1%)으로 나타남
- 설치된 놀이기구수 대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구는 건너는기구 (1.25%)와 공중놀이기구(1.23%) 순으로 조사됨

[놀이기구별 사고현황]

(단위 : 개, 건)

구분	흔들 놀이기구	조합 놀이대	그네	오르는 기구	미끄럼틀	건너는 기구	기타 놀이기구	물놀이 기구	회전 놀이기구	공중 놀이기구	바닥재
개수	135,259	65,485	30,926	15,599	5,639	5,534	7,552	1,650	2,382	244	79,428
사고건수	23	101	25	41	16	61	3	3	1	3	9
전체사고 건수대비	8.0%	35.3%	8.7%	14.3%	5.6%	21.3%	1.0%	1.0%	0.3%	1.0%	3.1%
개수대비	0.02%	0.15%	0.08%	0.26%	0.28%	1.25%	0.04%	0.18%	0.04%	1.23%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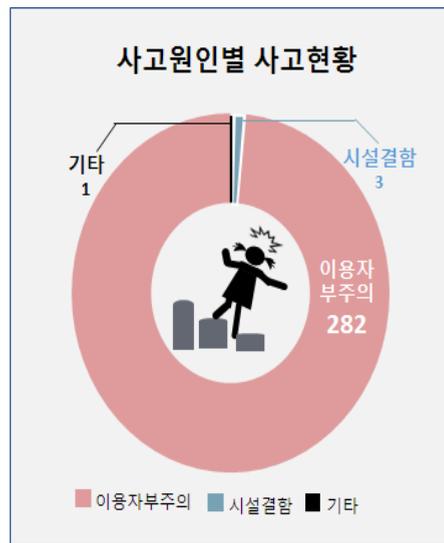
8 사고원인별 사고발생 현황

-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282건(9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결함 3건(1.0%), 기타 1건(0.3%) 순으로 나타남

[사고원인별 사고현황]

(단위 : 건)

구분	총 사고 건수	이용자 부주의	시설 결함	기타
계	286 (100%)	282 (98.7%)	3 (1.0%)	1 (0.3%)
주택단지	88	88	-	-
도시공원	19	18	1	-
유치원	27	27	-	-
학교	146	143	2	1
놀이제공영업소	3	3	-	-
아동복지시설	2	2	-	-
공공도서관	1	1	-	-



- 최근 3년간 사고원인별 추이를 보면, 놀이시설 대부분의 사고는 이용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용수칙 준수 및 지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사고원인별 사고발생 추이]

(단위 : 건)

년도	사고건수	이용자부주의	시설결함	개인질환	기타
2016	338	333	5	-	-
2017	322	315	4	-	3
2018	286	282	3	-	1
최근 3년간 평균	315	310	4	-	1

9 사고유형별 사고발생 현황

- 사고의 유형은 추락이 212건(74.1%)으로 가장 많았고, 충돌 32건(11.2%), 넘어짐 26건(9.1%), 접질림 6건(2.1%) 순으로 나타남

[사고유형별 사고현황]

(단위 : 건)

사고유형	사고건수	비율
계	286	100%
추락	212	74.1%
충돌	32	11.2%
넘어짐	26	9.1%
접질림	6	2.1%
미끄러짐	5	1.7%
엎매임	3	1.0%
급힘/찢림	1	0.3%
기타	1	0.3%

- 최근 3년간 분석결과,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사고유형별 사고발생 추이]

(단위 : 건)

구분	계	추락	충돌	넘어짐	접질림	미끄러짐	엎매임	급힘/찢림	기타
2016	337	215	48	39	1	17	8	-	9
2017	322	251	33	24	-	8	6	-	-
2018	286	212	32	26	6	5	3	1	1

10 손상부위별 사고발생 현황

- 부상자의 손상 부위를 보면, ‘팔 / 손’ 부위가 185명(57.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다리 / 발’ 40명(12.4%), ‘얼굴’ 24명(7.5%), ‘가슴 / 등’ 15명(4.7%), ‘치아손상’ 14명(4.3%) 순으로 나타남

[손상부위별 사고현황]

(단위 : 명)



- 최근 3년간 분석결과, ‘팔 / 손’부위의 사고는 줄어드는 반면, ‘다리 / 발’, ‘가슴 / 등’ 사고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손상부위별 사고발생 추이]

(단위 : 명)

구분	계	팔/손	다리/발	얼굴	치아손상	가슴/등	머리/목	기타
2016년	338	211	31	30	12	8	17	29
2017년	322	204	33	19	16	8	5	37
2018년	294	185	40	24	14	15	7	9

11 손상유형별 사고발생 현황

- 사고 시 주요 손상유형은 골절이 237건(80.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치아 손상 15건(5.1%), 베인상처/열상 8건(2.7%) 순으로 나타남

[손상유형별 사고현황]

(단위 : 명)

손상유형	부상자수	비율
계	294	100.0%
골절	237	80.6%
치아손상	15	5.1%
신경 / 근육 / 힘줄	6	2.0%
베인상처 / 열상	8	2.7%
타박상 / 좌상 / 부종	4	1.4%
뺨 / 염좌	4	1.4%
찰과상	3	1.0%
내장손상	2	0.7%
출혈	1	0.3%
화상	1	0.3%
뇌진탕	1	0.3%
기타	12	4.1%

Ⅲ 중대사고의 신고 및 처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 중 어린이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용자들이 이를 모르고 계속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놀이시설 사용금지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사고의 정의

■ 중대사고의 정의

- 놀이시설 내 놀이기구(바닥재 포함)를 이용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를 어린이로 한정하지 않음(놀이기구 이용으로 인해 성인이 사고를 당한 경우도 포함, 단, 시설과 무관한 사고(폭행, 자전거와의 충돌, 힐리스를 타던 중 넘어진 경우 등)는 해당되지 않음)

■ 중대사고의 종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 | | |
|--|----------------------|
| 1. 사망 | 5. 출혈이 심한 경우 |
| 2. 3명 이상 동시 부상 | 6. 신경·근육 또는 힘줄 손상 |
| 3.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48시간 이상의 입원치료 필요 | 7. 2도 이상 화상 |
| 4. 골절상 | 8. 부상면적이 신체표면의 5% 이상 |
| | 9. 내장이 손상된 경우 |

■ 종류별 중대사고의 적용기준

- 사망, 48시간 이상 입원, 신경·근육 또는 힘줄 손상, 2도 이상 화상, 신체표면 5% 이상 부상 : 진단서 및 관계서류 등에 따라 처리
- 골절상 및 내장 손상 : 모든 골절상(치아골절 포함) 및 내장손상
- 3명 이상 동시 부상 : 시행령 별표7 '2. 부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상
- 출혈이 심한 경우 :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출혈

2 중대사고의 신고

■ 신고기관

- 학교, 유치원, 학원 : 교육지원청
- 그 외 주택단지, 도시공원, 어린이집 등 : 시·군·구

■ 신고방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보고서’를 작성 제출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안전사고 입력 후 공문발송

■ 보고사항

- 사고일시, 사고시설 현황, 사고 경위
- 사고자 인적사항
- 관리주체의 조치사항(피해자 응급조치 및 병원이송, 놀이시설 이용금지* 등)
 - * 사고발생시 일단 놀이시설 이용금지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에 의해 시설하자로 인한 사고가 아님을 확인한 후 이용금지 해제

IV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수칙

→ **(설명)**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산업자원부 소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위 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4부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표지판 설치 시 사용자의 연령범위를 명시하여 안전을 도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법적의무사항은 아님)

1 공통사항

- 영유아는 보호자의 동반 하에 놀이를 마칠 때까지 보호 및 관찰을 받아야만 한다.
 ☞ 특히 **36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의 지도하에 놀 것**을 안내문 게시
- 놀이에 부적합한 끈이 달린 옷 또는 슬리퍼 등을 착용하거나 책가방, 장난감 등을 소지한 채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않는다.
 ☞ 특히, **미끄럼틀의 경우 줄넘기 줄 등을 목, 몸통 등에 감거나 옷끈을 늘어뜨린 채 타지 않도록** 주의
- 난간과 밧줄이 있는 놀이기구는 항상 두 손으로 잡고 이용한다.
- 한여름 또는 눈이 올 때는 놀이기구가 뜨겁거나 미끄럽지 않은 지 확인 후에 이용한다.
 ☞ 특히 **미끄럼틀의 경우 여름철 화상주의 안내 문구를 게시**
- 놀이시설에 위험한 물건이 있거나 위험한 상태로 되었을 때 또는 다친 사람이 발생하였을 때 놀이를 중단하고 즉시 도움을 요청한다.
- 놀이기구를 소중히 이용하며, 낙서하거나 부착물을 훼손하지 않는다.
- 놀이기구는 차례대로 이용하고, 사용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활동공간내에서는 야구, 축구, 배드민턴, 공놀이, 자전거 타기 등을 삼가 하여야 하며,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등을 세워 두어서도 안 된다.

2 기구별 주의사항

■ 그네

- 그네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타고 내린다.
- 서서 타거나 무릎으로 혹은 엎드려 타지 않는다.
- 움직이는 그네 곁에 서 있거나 다른 놀이를 하지 않는다.
- 그네 줄을 꼬면서 타지 않는다.
- 그네 좌석 한가운데 앉아 양쪽 손잡이를 잡고 탄다.
- 1명이 타도록 되어 있는 그네를 2명이 동시에 타지 않도록 한다.
- 그네 옆에 설치된 안전대에 걸터앉지 않는다.

■ 미끄럼틀

- 미끄럼틀을 거꾸로 기어 올라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여 한 계단씩 차례로 올라간다.
- 미끄럼틀 위에서 다른 사람을 밀거나 당기지 않는다.
- 앞사람이 없는 지 확인하고 한 사람씩 내려온다.
- 엎드려 타거나 서서 타지 않는다.
- 줄넘기 등을 신체 일부에 묶거나 두른 채 내려오지 않는다.
- 내려온 뒤에는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재빨리 비켜준다.
- 미끄럼틀 타고 내려올 때 다른 도구를 타고 내려오지 않는다.
- 미끄럼틀 난간 바깥쪽을 잡고 올라가거나 미끄럼틀 위에서 바닥으로 뛰어 내리지 않는다.

■ 공중 놀이기구

- 매달림형이나 좌석형과 같이 형식에 맞는 방법으로 탄다.
- 손잡이나 좌석에 한 사람씩만 이용한다.
- 이동구역에서 머물러 있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 회전 놀이기구

- 회전하는 도중에 뛰어 내리거나 타지 않는다.
- 회전 중에 친구와 미는 등 장난을 하지 않는다.
- 회전대를 갑자기 고속으로 밀지 않는다.
- 움직이는 회전대를 멈추기 위해 억지로 붙잡지 않는다.
- 회전대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 흔들 놀이기구(시소, 흔들말)

- 시소는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두손으로 손잡이를 꼭 잡고 탄다.
- 시소위에 서 있거나 움직이는 중에 뛰어내리지 않는다.
- 내릴 때는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고, 시소 밑에 발을 두지 않도록 한다.

■ 조합놀이대(각 놀이기능 부분 참조)

- 흔들거리는 놀이기구는 반드시 난간을 잡고 이용하며 뛰어가지 않는다.
- 난간 또는 울타리 사이로 오르거나 신체 일부를 끼어넣지 않는다.
- 놀이기구 위에서 밀거나 잡아당기는 놀이를 하지 않는다.

■ 건너는 기구(무지개 다리, 구름다리, 평균대)

- 무지개다리, 구름다리를 사용하는 사람을 잡아당기거나 밀지 않는다.
- 앞사람이 움직이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 정글짐, 스페이스네트, 오르는 기구

- 놀이기구의 꼭대기에 서 있거나 누워있지 않는다.
- 놀이기구 위에서 상대방을 잡거나 밀지 않는다.
- 내려올 때는 뛰어내리지 않고 아래를 살피고 천천히 한발씩 내려온다.
- 위에 누군가가 있을 경우 그 밑으로 지나가지 않는다.

■ 폐쇄형 놀이기구

- 놀이기구 안에서 놀이 이외에 잠을 자거나 게임 등 다른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볼풀장 바닥에 누워 있지 않는다.
- 매달려 타는 기구(트랙라이더)는 한사람씩 차례로 이용한다.

■ 물이용 놀이기구

- 흙이 묻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않는다.
- 벗겨지기 쉬운 신발이나 걸림 또는 끼임이 가능한 복장은 착용하지 않는다.
- 물을 마시거나 물속으로 입수하지 않는다.
- 음식물이나 동물 등과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
- 물속에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지 않는다.
- 영유아 등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고, 기저귀를 찬 채 들어가지 않는다.
- 피부병 등 질환이 있는 어린이는 놀이를 삼간다.
- 놀이기구 이용 중에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른다.
- 놀이용으로 설치되지 않는 버킷이나 물 분사 등에 이용되는 시설에는 올라가거나 걸터앉지 않는다.
- 젖은 상태의 놀이기구의 표면은 매우 미끄러우므로 손잡이를 단단히 잡고 이용해야 하며, 뛰어서는 아니 된다.

■ 바닥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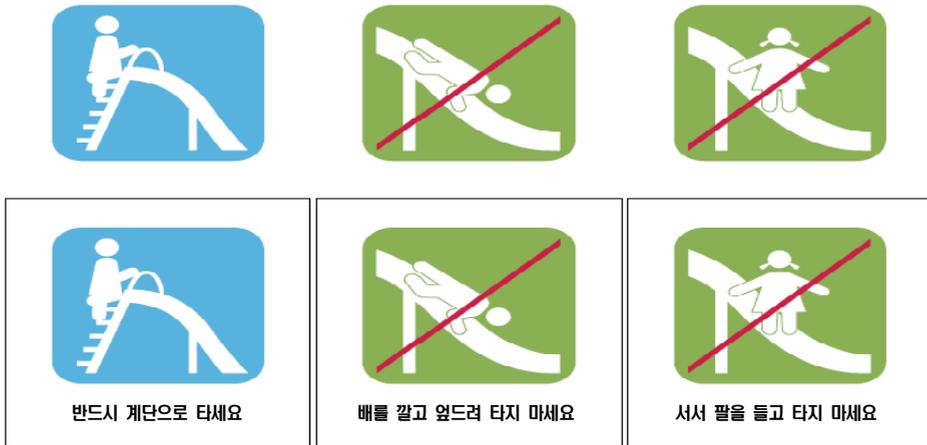
- 놀이 중에 모래나 바닥재료를 던지지 않는다.
- 날카로운 유리, 금속조각, 동물의 분뇨 등이 있으면 놀이를 중단한다.
- 고무매트 등 인공 바닥재료를 파헤치거나 떼어내지 않는다.

3 픽토그램의 활용

○ 놀이시설 표지판 또는 어린이놀이기구 등 어린이가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부착 사용한다.

☞ 픽토그램 파일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정보마당>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A. 미끄럼틀



B. 그네



C. 흔들놀이기구



마주보고 손잡이를 잡고 타세요



시소 위에 서거나 뛰지 마세요



내릴 때 시소 밑에 발을 두지 마세요

D. 정글짐



망사이로 목이 나왔을 때
줄을 흔들지 마세요



밑에 있는 친구를 밀지 마세요



꼭대기에서 뛰지 마세요

E. 회전놀이기구



회전할 때 매달리지 마세요



회전대를 발로 돌리지 마세요



회전 중에 친구와 장난(밀기)하지 마세요

F. 오르는 기구



손잡이를 양손으로 꼭 쥐고 타세요



거꾸로 매달리지 마세요



꼭대기에 눕거나 앉지 마세요

G. 건너는 기구



건너는 사람을 가로막거나
줄을 흔들지 마세요



손잡이를 반드시 양손으로
잡고 타세요



기구 밖에서 건너지 마세요

H. 공중놀이기구



반드시 손잡이를 꼭 잡고 타세요



밑에서 잡아당기지 마세요



한 손으로 타지 마세요

I. 조합놀이구



어
린
이
놀
이
시
설
안
전
관
리
매
뉴
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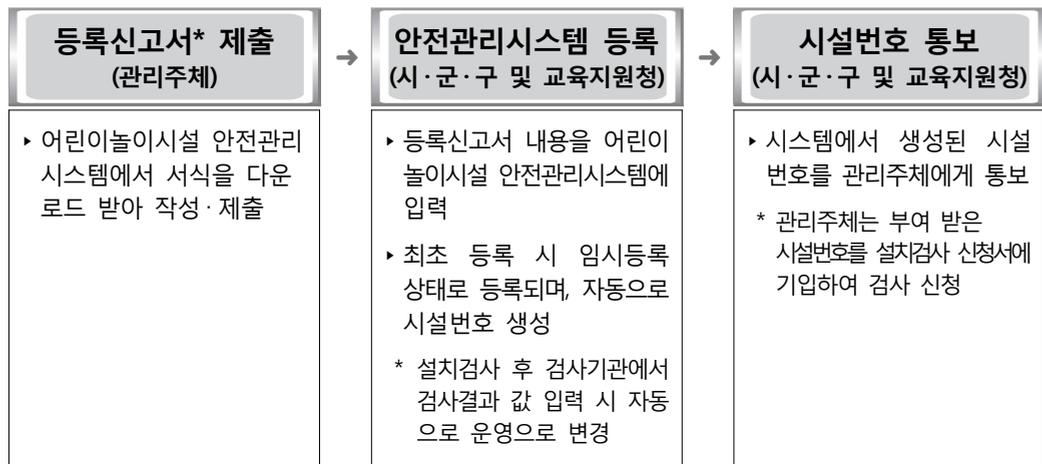
I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1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 시설별 처리기관

- 학교, 유치원, 학원 : 교육지원청
- 주택단지, 도시공원, 어린이집 등 상기 시설 외 : 시·군·구

■ 처리 절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www.cpf.go.kr) > 정보마당 >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 시스템 등록방법

1. 놀이시설 등록 - 접속 및 로그인

① www.cpf.go.kr로 접속 ②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 누르기 ③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엔터] 또는 [로그인] 버튼 클릭

1 안전개선과

2. 놀이시설 등록 - 놀이시설 조회 및 등록하기

시설번호	설치일자	놀이시설명	지역	설치장소	관리주체	전화번호	상태	최종검사일	안전검사여부	현황
0559616	2012-11-01	쌍용임대아파트놀이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	주력단지	쌍용임대아파트관리사무소	02-812-2571	운영	2015-05-07	검사완료	🔗
0559609	2017-04-14	서울시설공단 누비어린이집 옥상놀이터	서울 성동구 홍익동	어린이집	이지윤	02-2290-6177	운영	2017-04-19	검사완료	🔗
0559578	2017-04-14	제과호 어린이공원	전북 군산시 조촌동	도시공원	군산시장(산림복지과)	063-454-2983	운영	2017-04-14	검사완료	🔗
0559555	2017-03-24	자연캐츠 어린이집 -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광주 남구 병선동	놀이제공영업소	(주)아이월드 G&KIDS 어린이집	031-846-8824	운영	2017-04-13	검사완료	🔗
0559552	2016-12-22	맑곶놀이터 놀이시설	서울 광진구 능동	도시공원	서울시설공단 서울어린이대공원	02-450-9351	운영	2017-04-18	검사완료	🔗

① 기본정보관리>놀이시설관리에서 '시설명' 등으로 검색하여 기 등록여부 확인
② 미등록 시 기본정보관리>놀이시설관리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시설정보 등록

2 안전개선과

3. 놀이시설 등록 - 시설정보 입력하기

기본정보관리 | 승인관리 | 안전관리 | 현황정보조회 | 통계 | 참여마당 | 사이트관리 | 시스템관리

놀이시설관리 | 유희기안현황 | 놀이시설관리(경사기관)

HOME > 놀이시설관리 > 시설정보 입력

놀이시설관리

관리주체: **홍길동** | 사무실전화: **02-123-4567**

지역분류: 서울 > 강남구 > 개포동 > 선택 (읍/면/동까지 선택)

시설명: 개포도서관 놀이시설

주소: **지번주소찾기** | 도로명주소찾기 | 주소초기화
0633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09길 69 (개포동, 별지개포자이)

설치장소: **공공도서관** (선택)
 단단지 내 설치처가 다른 시설인 경우 각각 등록.
 목록: 공공도서관, 도서관경계시설, 시설경계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대안교육포, 의료기관, 주택단지, 학교, 놀이제공영역시설, 체육시설,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종교시설, 자연마을, 자연휴양림, 어린이집, 아동장, 공공도서관, 기타 (교육청 소관)

민간/공공구분: 민간 공공

운영여부: 임시등록 검시결과 등록

실내/실외: 실내 실외

홀놀이형 놀이기구: 포함 미포함

안전이용수칙: :
CCTV: :
파고라(장자): :
음용수시설: :
기타 부대시설: :

의무여부: 의무 비의무

설치일자: 20170419 (등록형식:YYYYMMDD)

인수일자: (등록형식:YYYYMMDD)

시설면적: 150 (단위: m²)

시설등록 | 저장하기

입력방법 - 성명, 전화번호, 지역분류, 주소, 설치장소, 의무여부 등 필수 값 입력 후 저장하기

4. 놀이시설 등록 - 놀이시설 등록 조회하기

기본정보관리 | 승인관리 | 안전관리 | 현황정보조회 | 통계 | 참여마당 | 사이트관리 | 시스템관리

놀이시설관리 | 유희기안현황 | 놀이시설관리(경사기관)

HOME > 놀이시설관리 (조회건수 : 1건)

놀이시설관리

시설번호: 564882 (2)

설치장소: 전체 (선택) (1)

의무여부: 선택

운영여부: 전체 (1)

실내/실외: 선택

안전검사종류: 전체

안전검사여부: 전체

홀놀이형 놀이기구: 선택

설치일자: ~

소관구분: 전체 (2)

민간/공공: 선택

최종검사일: ~

지역: 선택 | 선택 | 선택 | 선택

검색하기 | 검색초기화 | 역설저장 | 등록하기

시설번호	설치일자	놀이시설명	지역	설치장소	관리주체	전화번호	상태	최종검사일	안전검사여부/현황
0564882	2018-07-01	개포도서관 놀이시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공공도서관	홍길동	02-123-4567	임시등록		미검사

1

역설저장 | 등록하기

조회방법

① 놀이시설관리에서 설치장소 및 운영여부를 전체로 변경

② 시설명 또는 시설번호 입력 후 검색하기 후 등록된 놀이시설 등록 여부 확인

놀이시설 운영여부 변경 참고자료

<p style="text-align: center;">영구폐쇄</p> <p>※ DB에서 영구 삭제되어 복구가 되지 않으니 삭제 시 신중검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전환 : 놀이시설이 합법적으로 타 공동시설(노인정, 도서관 등)로 전환되는 경우 ▪ 폐교 및 폐업 : 학교, 어린이집 등이 행정적, 사실적으로 없어지는 경우 ▪ 재건축(재개발) : 주택단지 등 재건축으로 주민이주 시작되어 놀이시설이 철거된 경우 ▪ 기타(직접입력) : 위 3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직접 입력
<p style="text-align: center;">이용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검사 불합격 :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시설 검사) 불합격으로 이용금지 한 경우 ▪ 안전검사 미이행 :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시설 검사) 미이행으로 이용금지 한 경우 ▪ 안전진단 신청 : 관리주체 안전점검 결과 놀이시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기타(직접입력) : 위 3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직접 입력 (예시) 중대사고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이용을 중지한 경우 등
<p style="text-align: center;">철거</p> <p>(개별법에 의해 설치되어 놀이터는 있으나 놀이기구가 없는 상태) ※ 철거로 조회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시설 :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150세대이상), 영유아보육법(50인 이상)에 의거 반드시 놀이시설이 있어야 하는 시설 ▪ 비의무시설 : 개별법에 의해 놀이시설이 설치되는 되었으나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시설 ▪ 비의무시설이 '철거' 상태에서 합법적 절차(설계변경, 행위허가 등)를 거친 경우 영구폐쇄 상태로 변경
<p style="text-align: center;">임시폐쇄</p> <p>※ 임시폐쇄로 조회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원, 영업정지 등으로 시설 전체가 폐쇄된 경우

2 놀이기구 등록 및 삭제

■ 등록 방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로그인 > 기본정보관리 > 놀이시설관리 > 시설검색 > 놀이시설명 클릭

2. 놀이기구 등록 - 놀이시설 조회

시설번호	설치일자	놀이시설명	지역	설치장소	관리주체	전화번호	상태	최종검사일	안전검사여부(현황)
0571534	2019-10-01	즐거움 놀이대	서울 양국동	주학단지	홍길동	044-000-0000	일시등록		대리사
0571379	2019-11-16	한글쓰기 실내놀이대(가래마을 2단지)	서울 여의동	주학단지	홍길동	044-066-0821	일시등록		대리사
0570748	2019-09-19	반죽리차장 실내놀이대(놀이시설)	서울 양국동	유치원	반죽리차장	044-410-6100	일시등록		대리사
0570574	2019-08-10	천천아트센터실드 실내놀이대	서울 소동동	놀이대공영장소	통일합법리	044-067-3231	일시등록		대리사
0568212	2019-05-20	가래마을 4단지 캐리비안연대 실내놀이대	서울 고동동	주학단지	가래마을 4단지 입주 자대료회	044-068-6338	일시등록		대리사
0568384	2018-12-27	부흥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대14	서울 부곡동	도시공원	태원관광(주)	044-066-1902	일시등록		대리사
0564934	2018-06-28	문누리캐릭터즈룸 실내놀이대	서울 보림동	식물감격장소	<주>아이월드	044-065-0681	일시등록		대리사
0564932	2018-06-14	태원마을 4단지 실내놀이대	서울 대방동	주학단지	<주>아이월드	070-4353-2215	일시등록		대리사

등록방법

- ① 기본정보관리>놀이시설관리에서 '시설명', 시설번호 등으로 놀이시설 검색
- ② 놀이시설명 클릭

행정안전부 1 안전개선과

- 놀이기구 탭 이동 > 기구등록 > 저장하기

2. 놀이기구 등록 - 놀이기구 탭 이동 및 기구등록

놀이기구명	관리주체/담당	안전관리자	놀이기구	안전검사	안전교육	안전사고	보험가입	상징처분	우수시설	놀이기구목록	기구수리목록
놀이시설명	관리코드	3611010100-0036 (시설번호 : 0571534)	놀이시설명	즐거움 놀이대	관리주체	홍길동					

조회방법

- ① 놀이기구 탭 이동
- ② 기구등록 클릭

행정안전부 8 안전개선과

○ 기구등록 > 저장하기

2. 놀이기구 등록 - 기구 수량, 유형, 설치일자 등록

조희방법

- ① 등록수량 입력
- ② 기구유형 클릭하여 놀이기구 선택
- ③ 놀이기구 설치일자 입력
- ④ 저장하기 클릭 > 확인

■ 삭제 방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로그인 > 기본정보관리 > 놀이시설관리 > 시설검색 > 놀이시설명 클릭 > 놀이기구 탭 이동

2. 놀이기구 삭제 - 놀이기구 탭 이동 및 기구 선택

조희방법

- ① 놀이기구 탭 이동
- ② 삭제하고자 하는 놀이기구 선택

※ 놀이기구 삭제 시 영구 삭제되어 복구가 되지 않으니 신중히 확인 후 삭제 처리

- 삭제할 놀이기구명 클릭 > 수정하기 > 폐기일자 입력 > 저장하기

2. 놀이기구 삭제 - 수정하기

HOME > 놀이시설관리 > 놀이기구 상세조회

놀이시설번호: [] 시설코드: [] 시설명: [] 검색

시설정보 관리주체/담당: 안전관리자 **놀이기구** 안전검사 안전교육 안전사고 보험가입 행정처분 우수시설 **놀이기구목록** **기구수리목록**

시설번호: 3611010100-0036 (시설번호: 0571534) 시설명: 을거운 놀이터
 시설현황: 안전/공공구분: 안전 관리 시설장소: 주차단지
 운영여부: 임시등록 임시등록 관리주체: 동결동

놀이기구정보

놀이기구	기구유형: 그네	기구번호: 1470477
	설치업체: []	설치자: []
	설치일자: 2019-11-10	설치위치: []
	폐기일자: []	폐기사유: []
	생산일자: []	인증번호: []
	생산국: []	제조업체: []
등록정보	확인자: []	확인일자: []

목록으로 **수정하기** **삭제하기** ①

조회방법 ① 수정하기

- 폐기일자 입력 > 저장하기

2. 놀이기구 삭제 - 폐기일자 입력 및 저장하기

HOME > 놀이시설관리 > 놀이기구수정

놀이시설번호: [] 시설코드: [] 시설명: [] 검색

시설정보 관리주체/담당: 안전관리자 **놀이기구** 안전검사 안전교육 안전사고 보험가입 행정처분 우수시설 **놀이기구목록** **기구수리목록**

시설번호: 3611010100-0036 (시설번호: 0571534) 시설명: 을거운 놀이터
 시설현황: 안전/공공구분: 안전 관리 시설장소: 주차단지
 운영여부: 임시등록 임시등록 관리주체: 동결동

놀이기구정보수정

놀이기구	기구유형: 그네	기구번호: 1470477
	설치업체: []	설치자: []
	설치일자: 2019-11-10	설치위치: []
	폐기일자: 2019-11-20 ①	폐기사유: []
	생산일자: []	인증번호: []
	생산국: []	제조업체: []
등록정보	확인자: []	확인일자: []

목록으로 **저장하기** ②

조회방법 ① 폐기일자 입력 ② 저장하기 클릭 > 확인

II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등록

1 안전관리자 등록·승인

■ 등록 방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접속

1.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등록 신청 | **접속 및 놀이시설현황** |

1 www.cpf.go.kr

접속방법

- 1 www.cpf.go.kr로 접속
- 2 좌측 상단의 [놀이시설현황] 클릭

- 어린이놀이시설현황 > 놀이시설현황에서 시설명, 시설번호 등으로 시설 검색

2.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등록 신청 | **놀이시설 조회** |

조회방법

- 1 상세검색 : 시설명, 주소, 시설번호 중 1가지 선택
- 2 우측에 놀이시설명, 주소, 시설번호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 3 놀이시설명 클릭

○ 놀이시설명을 클릭해 상세정보 조회

3.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등록 신청 | 놀이시설 상세정보 조회 |

조회방법

- 1 안전관리자 등록여부 확인
(기 등록 되었을 경우 지정일자가 표시됨)
- 2 안전관리자 미등록 시 등록 버튼 클릭

03

○ 안전관리자 지정일자, 안전관리자명, 사무실 전화번호 입력

4.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등록 신청 | 안전관리자 등록화면 |

등록방법

- 1 시설명 확인 · 지정일자, 안전관리자명, 전화번호 입력
- 2 저장하기 클릭 → 신청완료

■ 승인 절차

-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 등록(또는 변경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정보가 관할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으로 전송(안전관리자 승인요청 중으로 변경)

5.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승인요청 중 | 놀이시설 상세정보 조회 |

조회방법

- 1 안전관리자 등록신청 후 상세정보 화면 (승인요청 중)
※승인은 시·군·구 또는 지역교육청 수행, 행정안전부에 승인요청하지 않도록 주의

05

-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은 내용확인 후 승인 처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로그인>기본정보관리>승인관리>안전관리자승인

■ 결과 확인

- 등록신청 화면에 안전관리자 승인요청 중 표시가 사라지고 안전관리자 지정 일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승인완료

6. 안전관리자 등록여부 확인 및 변경신청



조회방법

- 1 안전관리자 등록 확인
(지정일자가 표시된 경우 등록이 완료된 상태임)
- 2 안전관리자 변경 시 변경 버튼 클릭
(신규 등록과정과 동일하게 처리)

FAQ

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안전교육 정보조회 및 보험가입내역 등록을 위해 놀이시설을 조회하려고 하는데, 놀이시설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놀이시설은 **운영 중인 놀이시설**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관 관리감독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에서 놀이시설을 **삭제, 이용금지, 임시폐쇄** 등으로 변경 했을 경우 조회가 되지 않으니, 해당 관리감독기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놀이시설 조회는 **시설명, 주소, 시설번호**로 가능하나 주소는 정확한 주소가 입력되지 않을 경우 조회가 되지 않으니, **가급적 시설명 및 시설번호로 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험등록·승인

■ 등록 방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접속

보험등록

1. 관리주체 보험등록 및 신청 | 접속 및 놀이시설현황 |

1 www.cpf.go.kr

접속방법

- 1 www.cpf.go.kr로 접속
- 2 좌측 상단의 [놀이시설현황] 클릭

07

- 어린이놀이시설현황 > 놀이시설현황에서 시설명, 시설번호 등으로 시설 검색

2. 관리주체 보험등록 및 신청 | 놀이시설 조회 |

조회방법

- 1 상세검색 : 시설명, 주소, 시설번호 중 1가지 선택
- 2 우측에 놀이시설명, 주소, 시설번호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 3 놀이시설명 클릭

08

○ 놀이시설명을 클릭해 보험가입 여부 확인

3. 관리주체 보험등록 및 신청 | 놀이시설 상세정보 조회 |

조회방법

- 1 보험가입 여부 확인
- 2 보험 미가입시 등록 버튼 클릭

09

○ 미등록 시 등록버튼을 클릭

- 보험증서번호, 상품명, 가입일자, 만기일자 등 입력 후 저장하기

4. 관리주체 보험등록 및 신청 | 보험가입 등록 |

등록방법

- 1 등록자성명, 전화번호, 증서번호, 상품명, 보험사, 가입일자, 만기일자 등록 및 보험증서 첨부
- 2 저장하기 클릭 → 신청완료

10

■ 승인 절차

- 관리주체가 보험가입 등록 및 변경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정보가 관할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으로 이송(승인요청중으로 변경)

5. 관리주체 보험가입 승인요청 중 | 놀이시설 상세정보 조회 |



조회방법

1 보험등록 신청 후 상세정보 화면 (승인요청 중)
 ※승인은 시·군·구 또는 지역교육청 수행, 행정안전부에 승인요청하지 않도록 주의

-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 서류 및 내용확인 후 승인 처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로그인>기본정보관리>승인관리>보험가입승인

■ 결과 확인

- 등록신청 화면에 승인요청 중 표시가 사라지고 보험상품명 및 가입일자, 만기일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승인완료

6. 보험등록 여부 확인 및 보험 유효기간 만료 재등록



조회방법

1 보험 등록 확인
 (가입일자 및 만기일자가 표시된 경우 등록이 완료된 상태임)

2 보험가입 내역 재등록 시 변경 버튼 클릭
 (신규 등록과정과 동일하게 처리)

3 안전사고 등록

■ 안전사고 등록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로그인 > 기본정보관리 > 놀이시설관리 > 놀이시설 검색 > 놀이시설명 클릭 > 안전사고 탭 > 등록하기 > 사고정보 입력* > 저장하기

* 안전사고 입력 시 사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입력

※ 관리감독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 안전사고 정보 입력 후 행정안전부로 공문발송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로그인

1. 안전사고 등록 - 접속 및 로그인

접속방법

1. www.cpf.go.kr로 접속
2.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 누르기
3.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엔터] 또는 [로그인] 버튼 클릭

○ 기본정보관리 > 놀이시설관리 > 놀이시설 검색 > 놀이시설명 클릭

2. 안전사고 등록 - 놀이시설 조회

놀이시설관리 | 주요기능현황 | 놀이시설관리(조사기관)

HOME > 놀이시설관리 (조회건수 : 0건)

① 시설명, 시설번호

시설번호	설치일자	놀이시설명	지역	설치장소	관리주체	전화번호	상태	점검대상일	안전검사여부현황
0571534	2019-10-01	올거운 놀이터	서울 전국동	주학단지	홍길동	044-000-0000	임시등록		대검사
0571379	2019-11-16	한동고교 실내놀이터(한동고교 2단지)	서울 여건동	주학단지	홍길동	044-000-0000	임시등록		대검사
0570748	2019-09-19	한국과학기술관 실내놀이시설	서울 전국동	유치원	한국과학기술관	044-410-6100	임시등록		대검사
0570574	2019-08-10	한편아트센터 실내놀이터	서울 소담동	놀이재공영업소	동양합원나	044-067-3231	임시등록		대검사
0568212	2019-05-20	가락마을 4단지 커뮤니티센터 실내놀이터	서울 고궁동	주학단지	가락마을 4단지 입주자대표회의	044-068-6338	임시등록		대검사
0568384	2018-12-27	부용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4	서울 부강동	도시공원	태양환경(주)	044-066-1902	임시등록		대검사
0564934	2018-06-28	관악구관악초교 실내놀이터	서울 봉암동	식용감격업소	(주)아이월드	044-065-0691	임시등록		대검사
0564932	2018-06-14	태릉마을 4단지 실내놀이터	서울 대명동	주학단지	(주)아이월드	070-4353-2215	임시등록		대검사

등록방법

- ① 기본정보관리 > 놀이시설관리에서 '시설명', 시설번호 등으로 놀이시설 검색
- ② 놀이시설명 클릭

○ 안전사고 탭 > 등록하기

2. 안전사고 등록 - 안전사고 탭 이동 및 등록하기

HOME > 놀이시설관리 > 안전사고 (조회건수 : 0건)

① 시설번호, 시설코드, 시설명

안전사고 탭 이동

시설정보	관리주체/담당	안전관리자	놀이기구	안전검사	안전교육	안전사고	보험가입	행정처분	유수시설
시설명	관리주체/담당	안전관리자	놀이기구	안전검사	안전교육	안전사고	보험가입	행정처분	유수시설
시설명	시설코드	361101030-0036 (시설번호 : 0571534)				안전사고	보험가입	행정처분	유수시설
시설명	관리주체/담당	안전관리자	놀이기구	안전검사	안전교육	안전사고	보험가입	행정처분	유수시설
시설명	관리주체/담당	안전관리자	놀이기구	안전검사	안전교육	안전사고	보험가입	행정처분	유수시설

② 등록하기

등록방법

- ① 안전사고 탭 이동
- ② 등록하기 클릭

○ 사고정보 입력* > 저장하기

2. 안전사고 등록 - 안전사고정보 입력

기본정보관리		승인관리	연결관리	현황정보조회	통계	승계대당	사이트관리	시스템관리	
놀이시설관리 유희기안현황 놀이시설관리(중시기간)									
HOME > 놀이시설관리 > 안전사고 입력									
- 시설번호		- 시설코드		- 시설명		검색			
시설정보	관리주체/담당	연결관리자	놀이기구	안전검사	안전교육	안전사고	보험가입	생장치분	우수시설
- 시설현황	- 시설코드 3611010100-0036	- 안전/공공구분 안전	- 안전교육 접시등록	- 시설번호 : 0571534		- 시설명 즐거움 놀이터	- 설치장소 주력단지	- 관리주체 공립통	
안전사고정보									
- 사고정보	- 놀이기구유형 조립놀이대	- 사고일자 2019.11.15 (월)	- 사고시간 16시 15분	- 사고원인 이용자 부주의	- 사고사각 15 : 15	- 조치사항 119구급차를 불러 병행으로 후송 조치 후, 사고 놀이시설은 즉시 이용금지 조치하고 관리감독기관에 중대사고 신고 함			
- 사고자정보	- 사고자명 홍길동	- 중대사고 유무 공립	- 사망여부 <input type="checkbox"/> 사망	- 사고자 나이 6 세	- 피해부위 다리/팔	- 사고자 성별 <input type="radio"/> 여자 <input checked="" type="radio"/> 남자	- 피해내용 공립		

등록방법 ① 사고가 발생한 놀이기구 선택 / 사고원인, 일자, 시각, 내용, 조치사항, 사고자명, 나이, 성별, 중대사고 유형, 피해부위 입력 ② 추가 클릭 ③ 저장하기 > 확인



4 행정처분 등록

■ 행정처분 등록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로그인 > 기본정보관리 > 안전관리 > 행정처분관리 > 등록하기 > 시설검색(시설번호, 시설명) > 행정처분 정보입력 > 저장하기

2. 행정처분 등록 - 행정처분관리 메뉴 이동

등록방법 ① 안전관리 > 행정처분관리 클릭
 ② 등록하기 클릭

행정안전부 7 안전개선과

2. 행정처분 등록 - 행정처분관리 메뉴 이동

등록방법 ① 시설번호 또는 시설명 입력 후 검색 클릭
 ② 처분일자, 처분명, 처분량, 처분사유 입력 ③ 저장하기

행정안전부 8 안전개선과

FAQ

문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보험가입 후 가입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보험등록 사항을 모두 입력하고 정상 저장되었는데, 놀이시설을 조회해보면 신청이 되지 않고 다시 “등록”버튼이 다시 활성화 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이런 현상은 보험가입내역 등록 시 보험증권 첨부파일의 이미지 형식이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보험이미지 첨부 시 이미지 형식을 jpg, gif, png 파일로 변경해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입니다. 보험등록 또는 안전관리자 등록(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로그인 ID(비번)를 잃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로그인 ID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에 부여됩니다. **관리주체(초등학교장,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어린이집 원장 등)에게는 별도로 ID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어린이놀이시설 보험등록 또는 안전관리자 등록(변경)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접속 후 놀이터를 시설명 등으로 검색해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전관리시스템 > 놀이시설현황 > 놀이시설 조회 > 보험가입 및 안전관리자 등록·변경 신청

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또는 보험가입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정보를 잘못 입력해서 재등록하려고 하는데 승인요청중이라는 문구만 보이고 재신청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 관리주체가 시스템을 통해 안전관리자 및 보험을 등록하고 저장하면, 관련정보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으로 신청내역이 전송됩니다.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에서 관련 신청 정보를 삭제해야 다시 등록 버튼이 활성화 되니, 관리감독기관에 삭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및 안전교육을 이수했으나 시스템에 미검사 또는 미이수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누가 입력해야 하나요?

답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및 안전교육에 대한 결과 입력은 검사기관, 안전관리지원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사, 교육결과는 검사합격증 및 교육이수증 발급 후 즉시 입력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입력이 누락되었을 경우 해당 검사 및 교육기관에 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전관리시스템 > 놀이시설정책소개 > 안전검사기관, 안전관리지원기관 연락처 확인



○ 보험과 안전관리자 승인이 늦어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수시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www.cpf.go.kr)에 접속하여 승인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접속 에러 등 서비스 장애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며, 그 외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및 삭제, 시설정보 변경 등 전반적인 관리는 관리감독기관(시·군·구, 교육지원청)에서 수행

관리감독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행정안전부로 많은 문의가 되고 있는 바, 관리감독기관은 시스템 이용방법을 숙지하여 민원인에게 안내 협조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안전사고나 행정처분이 발생했을 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www.cpf.go.kr)에 등록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인 쇄 : 2019년 12월

초 판 : 2018년 12월

2 판 : 2019년 12월

발 행 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Tel : 044) 205-4216

Fax : 044) 205-8920

인 쇄 처 : 나라인쇄 044) 866-638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www.mois.go.kr